I.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1. 중대에서 하대로
- 2. 귀족사회의 분열과 왕위쟁탈전
- 3. 정치개혁의 실패
- 4. 골품제도의 퇴화
- 5. 수취체제의 모순과 농민층의 피폐

I.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1. 중대에서 하대로

1) 기로에 선 중대 전제왕권

《三國史記》의 찬자는 新羅本紀에 대한 기술을 끝맺으면서 신라 사람들이 자신의 역사를 上・中・下의 3代로 시대구분했다는 설을 싣고 있다. 이에 의하면 천년왕국인 신라의 전 역사 가운데 삼국을 통일하기까지의 최초 700여년간이 상대에 속하며, 이에 후속하는 260여 년간의 통일기는 다시 중대와하대로 나뉜다.

그런데 중대와 하대는 惠恭王 말년(780)의 정변을 경계로 하고 있다. 이정변에 의해서 太宗武烈王의 후손인 혜공왕은 거듭되는 내란 끝에 마침내 피살되어 새로운 왕통이 등장하게 되었다. 하지만 중대와 하대의 구분은 단순히 왕통의 변화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신라 국가의 運祚에 치명적인 낙인을 찍은 큰 사건이었다. 뒤에서 보게 되듯이 하대는 신라가 삼국통일의 여세를 몰아 정력적으로 이룩한 고도로 중앙집권화된 정치·사회체제가 동요하기 시작하고 이에 수반하여 중대 문화의 황금시대가 이윽고 쇠퇴의 길로 접어드는 그 자체 거대한 변혁을 의미하고 있다.

주지하듯이 중대는 654년 金春秋가 眞德女王의 뒤를 이어 태종무열왕으로 즉위함으로써 개막되었다. 그가 즉위할 무렵 신라는 치열해진 삼국항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힘겨운 국가보위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善德女王 11년(642) 백제와 고구려에 의한 대공세가 있은 뒤로부터 신라는 줄곧 군사적인 위기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동왕 16년 정월에는 上大等 毗曇에 의한 내란이 일어나 관군과 반란군이 도성 안에서 서로 격돌하기까지 했었다. 무열왕은 이

같은 국가적인 위기 국면을 타개하기 위하여 지금까지의 수세에서 일약 공세로 전환했다. 바야흐로 지금까지의 국가보위전쟁은 삼국통일전쟁으로 대전환을 맞게 되었다.

신라는 무열왕과 그 아들 文武王 양대에 걸쳐서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끝에 가서는 연합군으로 끌어들인 唐軍을 한반도에서 몰아냄으로써 삼국통일의 대업을 이룩했다. 이 때가 바로 문무왕 16년(676)이었다. 이제 진정三韓은 一家가 되었으며, 太平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어도 小康이라고 말할수 있는 형편이 되었다. 신라는 이 때부터 혜공왕 16년(780)의 파국이 도래할때까지 1백여 년간 국제평화와 안녕, 그리고 일찍이 누려보지 못한 정치적안정과 번영을 누렸다.

중대의 정치적 안정을 확고하게 보장하고 있었던 것은 다름아닌 왕권이었다. 사실 이 시기에 들어와 왕권은 크게 강화되었다. 상대등 비담을 대표자로 하여 일어난 眞骨귀족세력의 반란을 실질적으로 진압한 김춘추·金庾信일파는 자신들이 옹립한 진덕여왕 때에 야심적인 정치개혁을 단행했다. 그것이 바로 진덕여왕 5년(651)의 관제개혁이었다. 이 때 종래 왕실의 家臣的 성격이 농후했던 稟主를 執事部로 개편하여 王政의 기밀사무를 맡게 한 것은 매우 주목되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그 장관인 中侍(景德王 때 侍中으로 개청함)는 병렬적으로 할거하고 있는 중앙의 제1급 행정관서인 여러 部・府를 유기적으로 통제하게 됨으로써 국가권력은 집사부를 통하여 국왕에 一元的으로 귀속하게 되었다. 더욱이 중시에게는 행정상의 失策뿐 아니라 국토를 기습적으로 강타한 천재지변의 발생에 대해서까지도 왕을 대신하여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왕권의 안전판과도 같은 구실을 맡게 하였다.1)

현재 학계에서는 중대를 흔히 專制王權의 시대라고 부르고 있다.2) 신라가

¹⁾ 李基白,〈新羅 執事部의 成立〉(《震檀學報》25·26·27, 1964;《新羅政治社會史研究》,一潮閣, 1974, 151~153·164~167쪽).

²⁾ 李基白,《韓國史新論》新修版(一潮閣, 1990), 107~108쪽. 전제왕권이 다만 中代에만 국한되어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中古말(즉 上代말부터 下代의 귀족연립정치에서도 지속된 정치형태였음을 강조하는 어떤 논자는 이 전제왕권이란 왕의 一人독재라기 보다는 오히려 관료제도의 뒷받침을 받으면서 소수의 귀족・외척세력의 정치적 지지와 타협 아래 존속될 수 있는 체제였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申瀅植,〈統一新羅 專制王權의 性

이 시대에 들어와 일종의 전제왕권을 구축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첫째로 태종무열왕·문무왕 부자의 집념과 노력에 의해 통일의 대업이 달성됨으로 해서 무열왕 계통의 권위가 크게 상승된 점, 둘째로 삼국통일을 전후한 시기에 왕권 강화에 沮害되는 일부 유력한 진골귀족을 성공적으로 제거한 점, 셋째로 통일전쟁 기간 중에 결속을 강화한 지방세력과의 유대를 한층 긴밀하게 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지지기반이 王京 6部로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된 점, 넷째로 앞서 지적했듯이 집사부를 중심으로 하여 권력을 집중시키는 한편 儒敎政治理念을 도입하여 국왕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관료제도를 발전시킨점등을 들 수 있다.

그렇지만 이같은 전제적 왕권에도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중대의 권력 구조가 骨品體制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 때문이었다. 골품체제 는 기본적으로 진골귀족 萬能의 정치·사회적 체제였으며 국왕이라고 하더 라도 진골의 신분을 결코 초월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사실 진골귀족들의 국왕에 대한 對等性의 의식은 中古시대 이래 매우 뿌리 깊은 것이었다. 그런 까닭으로 삼국통일 뒤에도 진골귀족들은 자기들 위에 군림하는 전제군주가 아니라 자기들의 특권을 보장하는 대표자로서의 국왕을 요구했다. 그런데 국 가의 역량이 한층 증대된 통일기에 들어와 역대 국왕은 권력집중을 통한 전 제정치의 기반을 다지기 시작했고, 이는 필연적으로 진골귀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만 달성할 수 있었다. 이처럼 그 자체 골품체제에 기반을 두면 서 그 체제의 기본원리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데에 중대 왕권이 당면 한 정치적 딜레마가 도사리고 있었다.

한편 삼국통일 후 약 1세기간은 국내적으로 안정되고 국제적으로도 평화가 깃든 시대였다. 그리하여 국민들은 오랜만에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안정과 평화를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안일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사회적모순이 차츰 쌓여 간 것도 사실이다. 통일 전 1백 년간에 걸쳐 가혹한 생존전쟁을 치르는 동안 농민층은 매우 피폐해졌고, 이에 따라 사회의 分化작용이 소리없이 진행되었다. 사실 농민들은 국가보위전쟁과 삼국통일전쟁의 役

格〉(《統一新羅史硏究》, 三知院, 1990) 참조.

軍으로서 그토록 장기간에 걸쳐 국가에 봉사했으며, 또한 중대의 번영을 떠받치는 사실상의 주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의 진보는 이에 뒤따르지 못했으며, 오히려 唐制를 모방한 律令政治가 강화됨에 따라서 조세와 課役에한층 더 시달리게 되어 피폐한 모습을 나타내게 되었다. 더욱이 농민의 궁핍에 기생하는 高利貸자본이 발달하고 성덕왕 때에 장기간 전국을 휩쓴 大災害로 말미암아 조정의 적극적인 구호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민층은 광범위하게 몰락해 갔다. 삼국통일 시기를 전후하여 일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기시작한 아미타 淨土신앙이 8세기 중엽 무렵에 이르러 민중 사이에 공감을얻어 널리 유행한 것도 이같은 사회상을 배경으로 나타난 현상이었다.3)

2) 혜공왕 말년(780)의 정변 — 중대의 종말

중대의 역대 군주들은 권력집중을 목표로 하여 불교의 華嚴的인 세계관을 상징적으로 제시하면서 和平世界의 실현을 선전하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것은 신라를 위한 영속적인 질서를 보장할 수는 없었다. 사실 聖德王 때까지는 이기적인 진골귀족들을 억누르는 데 어느 정도 성공하여 표면상 화평의 세계를 謳歌하기도 했었다. 다만 그것은 왕실과 진골귀족세력 사이의 현존하는 긴장을 억제하는 데 불과했을 뿐이며, 긴장 그 자체를 해소시키는 데 성공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따라서 화평세계의 허상이 노출되고, 또한 이를 선전했던 국가권력이 쇠퇴의 조짐을 보이기만 하면 그 긴장은 거세게 폭발적으로 분출될 위험성을 안고 있었다.

이같은 불길한 징후는 景德王의 치세 후반부터 노출되기 시작했다. 왕은 본디 야심에 불타는 고집센 전제군주였다. 왕은 진골귀족 중심으로 운영되는 和白會議體를 견제하여 국왕 중심의 전제적 정치체제를 달성하려고 했다. 즉 신라 정치 전통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화백회의체에 대신하여 중국적인 군

³⁾ 李基白,〈淨土信仰의 諸樣相〉(《新羅思想史研究》, 一潮閣, 1986) 참조. 다만 아미타신앙을 계층간의 대립이라는 측면에서 파악하려는 경향에 반대하는 어떤 논자는 신라 중대의 정토사상 및 아미타신앙은 厭世的 성격보다는 현실긍정적인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金英美、〈新羅 中代의 阿彌陀信仰〉(《新羅佛教思想史研究》, 民族社, 1994) 참조.

주제도를 확립하려고 했다. 그러자면 유교정치이념을 적극 도입하고 아울러 국왕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관료제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었다. 律令體制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유교사상으로 무장된 관료집단의 양성이 요구되었다.

이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경덕왕이 주력한 것은 國學의 진흥이었다. 주지하듯 국학은 진덕여왕 5년(651)의 정치개혁 때에 唐의 제도를 모방하여 설치한 최고 학부였다. 다만 국학은 하급관료와 無位者를 대상으로 유학을 교육하는 기관이었으므로 진골귀족보다는 하급귀족, 특히 六頭品이 이에 가 장 흥미를 보였다. 4) 따라서 그간 큰 발전을 보지 못했다. 이에 경덕왕은 6년 (747) 정월 국학에 博士와 助敎를 두어 유교경전을 가르치게 하였다. 더욱이 경덕왕은 국학에 文廟를 설치하여 소위 廟學制를 확립하기까지 했다. 경덕왕 의 후계자인 혜공왕이 즉위 원년(765)에 국학에 行幸하여 교수관인 박사로 하여금 《尚書》를 강의케 한 것이나, 동왕 12년 2월 다시금 국학에 가서 강의 를 들은 것은 경덕왕 父子의 국학에 대한 비상한 관심을 보여준다. 어쩌면 국왕의 幸學 때에는 문묘에서 釋奠祭를 거행했을 개연성이 크다. 5)

중국식의 복잡한 儀禮主義的인 제도국가를 지향한 경덕왕의 시도는 진골 귀족들의 반발을 초래했다. 화백회의체의 의장인 上大等 金思仁은 경덕왕 15년 2월 왕의 개혁정치에 제동을 거는 상소를 올렸다. 비록 그는 당시 잇따라 발생하고 있던 災異현상을 표면상의 이유로 내걸었으나, 실상 유교정치사상에서는 재이현상 자체를 국왕의 失德에 대한 하늘의 견책으로 설명했던 것이다.6) 하지만 경덕왕은 자신의 개혁정치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자 김사인은 이듬해 정월 신병을 구실로 상대등직에서 물러났다. 이에 경덕왕은 심복인 金信忠을 후임으로 임명했다. 본디 상대등은 국왕과 거취를 같이 하도록되어 있었으므로 국왕에 의한 상대등의 견책성 교체란 신라의 정치적 전통에 비추어 볼 때 매우 異例的인 일이었다. 경덕왕의 先代 왕들은 화백회의체

⁴⁾ 李基白、〈新羅 骨品體制下의 儒教的 政治理念〉(《大東文化研究》6・7, 1970; 위의 책, 226~231等).

⁵⁾ 高明士,《唐代東亞教育圈的形成》(臺灣國立編譯館, 1984), 336쪽.

⁶⁾ 李熙德,〈古代의 自然觀과 儒教政治思想〉(《韓國古代自然觀과 王道政治》, 韓國研究院, 1994) 참조.

를 잘 조종하려고 했을 뿐이었는데 경덕왕은 상대등 교체라는 강경책으로 나온 것이다.

경덕왕은 상대등을 교체한 직후 한편으로는 진골귀족에 대한 정치적 타협을 모색한 듯하다. 일찍이 삼국통일 직후인 神文王 9년(689)에 혁파한 바 있는 祿邑을 16년(757) 3월에 부활한 것은 그 때문이 아니었을까고 짐작된다. 하지만 왕은 이 해 12월 전국 9州 및 그 예하의 117郡・293縣의 이름을 모두 漢式으로 고치는 개혁을 단행했다. 이어 1년쯤 지난 뒤인 18년 정월부터 2월에 걸쳐 거의 모든 관청 및 관직의 이름을 역시 한식으로 고쳤다. 신라고유의 지명과 관명을 한자 어휘로 개명한 이 漢化政策이 함축하는 의의는 매우 크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중대 왕권이 골품제의 속박에서 벗어나고자 줄기차게 시도한 專制化 경향의 상징적인 표현이었기 때문이다.7)

경덕왕대 후반기는 국제정세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경덕왕 14년 중국에서 安祿山의 반란이 일어나 唐과 긴밀한 관계에 있던 신라 朝野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일찍이 당과의 친선을 도모할 목적으로 만든 望德寺 13층탑이 마침 안록산의 난이 일어난 바로 그 해에 진동하고 開合하여 며칠 동안 쓰러질 듯하였던 사실을 놓고 신라인들이 안록산의 난과 결부시켜 해석했다는 《新羅國記》의 기사를 보더라도 이 점 충분히 점작할 수 있다.

진골귀족과의 권력투쟁에 지칠대로 지친 경덕왕은 만년에 의욕을 잃고 宴樂에 탐닉했다. 그 결과 왕의 정치개혁을 지지하던 측근의 寵臣들까지도 하나씩 둘씩 그의 곁을 떠나갔다. 경덕왕 22년 8월에는 왕당파의 거두인 김신충마저 상대등직에서 물러나 怨歌를 지어 실의의 말년을 자위했다. 심한 고독속에서 경덕왕은 재위 24년 6월 세상을 떠났다.

경덕왕의 뒤를 이어 태자이던 乾運이 즉위하여 혜공왕이 되었다. 즉위 당시 왕은 8세였다. 이에 母后가 섭정했지만 선왕 때부터 노출되기 시작한 진골귀족들의 불만을 억제하기에는 너무나 무력했다. 왕이 즉위한 이듬해 정월 두 해(二日)가 출현하여 불길한 장래를 예고했는데, 과연 동왕 4년(768) 7월에 귀족들의 반란이 일어났다. 이 때 一吉湌 大恭은 그 아우인 阿湌 大廉과 함

李基白、〈新羅 惠恭王代의 政治的 變革〉(《社會科學》2, 1958; 앞의 책, 1974, 246~247等).

께 무리를 모아 왕궁을 33일간이나 포위한 끝에 진압되었다.《三國遺事》에이 때 王都 및 5道 州郡의 96角干이 서로 싸워 크게 어지러워졌다고 한 것을 보면 내란은 전국에 걸친 대란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新唐書》新羅傳에는 이 때의 대란이 3년만에 진정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혜 공왕 6년(770) 8월에 일어난 대아찬 金融의 반란까지를 연속적인 것으로 오해한 때문인 듯하다.

이처럼 대공의 반란은 비록 진압되었지만 이는 결국 혜공왕대의 동란을 예고하는 적신호였다. 그 뒤 조정은 안정을 찾지 못한 채 끊임없이 동요했다. 그러던 중 혜공왕 10년 9월 金良相이 상대등이 되면서 정치상의 실권은 反王派의 수중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친왕파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11년 6월의 金隱居의 거병이라든지 8월의 廉相 등의 거병은 모두 親衛 쿠데타의 성격을 띠는 것이었다.8) 하지만 이같은 국왕의 권력 만회의 시도는 모조리실패로 돌아가고 김양상 일파는 12년 정월에 경덕왕이 고친 百官의 청호를 17년만에 모두 복구시키는 극적인 조치를 취했다. 이는 단순히 경덕왕의 개혁정책에 대한 부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실로 이같은 조치는 중대적인 것에 대한 부정을 뜻하는 대사건으로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9)

혜공왕 16년 2월 김양상 일파와 대립하고 있던 金志貞이 무리를 모아 궁궐을 포위했다. 국왕은 그의 거병을 내심 반겼을 터이다. 그러자 失權의 위기에 몰린 김양상은 金敬信 등의 협력을 얻어 이 해 4월 君側의 惡漢을 숙청한다는 구실 아래 군대를 일으켰다. 그들은 김지정의 군대를 토벌한 뒤 혜공왕까지 시해하였다. 이로써 중대는 최후의 막을 내리게 되었다.

3) 하대의 개막과 원성왕계의 성립

혜공왕 16년 정변의 승리자인 상대등 김양상은 新王으로 즉위했다. 그가 곧 宣德王이었다. 그는 奈勿王의 10세손으로 중대 왕실의 입장에서 보면 傍 系혈족에 지나지 않았다. 다만 그의 조부인 元訓이 성덕왕 원년(702) 9월에

⁸⁾ 李基白, 위의 책, 232~236쪽.

⁹⁾ 李基白, 위의 책, 244~247쪽.

집사부中侍에 임명되면서 중대 왕정에 참여하게 되었다.10) 더욱이 그의 아버지 孝方이 성덕왕의 딸과 혼인하면서 주목받는 가문으로 떠올랐다. 김양상은 이같은 가문의 후광에 힘입어 그의 외삼촌인 경덕왕 때 정계에 진출, 이윽고동왕 23년(764) 정월 阿湌으로 집사부시중에 취임하여 혜공왕 4년(768) 10월까지 비교적 장기간 재임했다. 시중을 지낸 뒤에도 그는 계속 요직에 있었다. 혜공왕 7년 12월에 제작이 완료된 성덕대왕신종의 銘文을 보면 그는 당시 肅正臺(司正府의 개명)와 修城府(京城周作典의 개명)의 장관직(令)을 겸임했다. 앞에서 보았듯이 그는 혜공왕 10년 9월 伊湌으로 상대등이 되어 정치상의 실권을 장악했고, 이를 발판으로 하여 혜공왕 16년의 정변을 주도했다. 혜공왕과 외사촌 관계였던 그가 언제 어떠한 계기로 반왕파로 돌아섰는지는잘 알 수가 없다.

신라 中古시대에 확립된 정치적 전통에 비추어 볼 때 상대등은 태자와 같은 정당한 왕위계승자가 없을 경우 왕이 될 수 있는 잠재적인 제1후보자였다.11) 다만 法興王 18년(531)에 상대등직이 설치된 이래 실제로 상대등이 즉위한 예는 없었다. 그런데 김양상은 상대등직에서 왕위에 오른 것이다. 이처럼 하대의 출발 그 자체가 하나의 이변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뒤에서보게 되듯이 하대를 통해서 태자가 없을 경우 상대등이 즉위하는 것이 거의일반적인 관례처럼 되고 말았다. 이같은 점만 보더라도 하대라는 시대가 권력구조면에서 중대와 크게 다르고 또한 중고시대와도 달랐던 것을 충분히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선덕왕대는 어찌 보면 일종의 과도기와 같은 느낌을 준다. 왕의 재위기간이 만 5년이 채 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가 죽은 뒤 왕통이 바뀌어 결국 一代에 그쳤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그는 내물왕계라고는 하지만 부친이 성덕왕의 사위가 됨으로 해서 중대 말기 정계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다. 그러니까 그는 母系로 본다면 결코 중대 왕실을 배반한다거나 더욱이 부정할 처지는 되지 못했다. 그가 재위 5년(784) 4월 왕위를 禪讓하려고

¹⁰⁾ 李基東,〈新羅 下代의 王位繼承과 政治過程〉(《歷史學報》85, 1980;《新羅骨品制社會와 花郎徒》,一潮閣, 1984, 147等).

¹¹⁾ 李基白, 〈上大等考〉(《歷史學報》19, 1962; 앞의 책, 1974, 99~100쪽).

한 것이라든지, 병석에서 내린 遺詔에서 자신은 본래 왕위에 야심이 없었으나 여러 사람들의 추대를 뿌리칠 수 없어 부득이 즉위하게 되었다고 토로한 것은 솔직한 심정에서 우러나온 것으로 짐작된다. 그는 재위 중에 중국의 祀典을 모방하여 社稷壇을 설치했는데, 이는 혜공왕 때 始祖廟에 대신하여 중국식의 5廟제도를 확립하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종래의 神宮에 대체하려 한 것인 듯하다.12)

선덕왕이 짧은 재위 기간 중에 시행한 주요 治績으로 주목되는 것은 다름 아닌 서북변경지방의 개척사업이었다. 왕은 2년(781) 7월에 신하를 보내어 浿江 이남의 州郡을 安撫했고 그 이듬해 2월에는 친히 漢山州에 巡幸하여 民戶를 浿江鎭에 옮기게 했다. 그런 다음 그 이듬해 정월에는 일찍이 執事侍郞을 역임한 阿飡 金體信을 大谷鎭(황해도 平山)軍主 곧 초대 浿江鎭典 장관(頭上大監)에 임명하여 본격적인 서북변경지방 개척사업에 착수했다. 이 패강진의 개척과 경영은 신라가 성덕왕 34년(735)에 唐으로부터 소위 패강 이남의 땅에 대한 영유를 정식으로 승인받은 직후부터 차츰 추진하기 시작한 북방진출의 일단의 성취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당시 渤海의 영토 확장, 특히 그남하정책으로 인한 변경 위협에 자극된 바도 적지 않겠으나, 그보다는 오히려 변경개척을 통해서 농경지를 확보함으로써 피폐해진 농민층을 구제하기위한 사회경제적 동기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13)

선덕왕이 재위 6년 정월 13일 병으로 죽자 상대등직에 있던 金敬信이 즉위하니 곧 원성왕이었다. 그런데 이 왕위계승은 순조롭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三國史記》 元聖王本紀와《三國遺事》元聖大王條에 의하면 아들이 없는 선덕왕이 죽자 신하들은 처음 김경신보다 서열이 높은 上宰相 金周元을 추대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때 마침 폭우가 내려 閼川이 범람, 그 북쪽에 살고 있던 김주원이 왕궁에 이를 수 없게 되자 다시금 귀족회의가 열려 김경신을 왕으로 추대했다고 한다. 김경신은 비록 현직 상대등이었으나 당시의 공인된 서열로는 次宰相이었을 뿐이다. 김주원은 태종무열왕의 6세손으로일찍이 혜공왕 13년(777) 10월에 侍中에 취임하여 혜공왕 16년의 정변 때까

¹²⁾ 崔光植, 《고대 한국의 국가와 제사》(한길사, 1994), 205~209쪽.

¹³⁾ 李基東,〈新羅 下代의 浿江鎭〉(《韓國學報》 4, 1976; 앞의 책, 221쪽).

지 재직했다. 당시는 상대등 김양상(선덕왕)이 실권을 잡고 있었을 때이므로 그는 반왕파와 행동을 같이 했을 터이다. 어쨌든 김주원을 배제한 김경신의 즉위에 모종의 계략 내지 억지가 작용했을 것이 틀림없다.¹⁴⁾ 김주원이 江陵에서 은퇴생활에 들어간 것이라든지, 뒷날 그의 아들 金憲昌이 부친이 왕위에 오르지 못한 것을 이유로 반란을 일으킨 것을 보더라도 이 점을 충분히 점작할 수 있다.

원성왕은 내물왕의 12세손으로 선덕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대 왕실에서 보면 방계혈족이었다. 다만 그의 증조부인 義寬(官)과 조부인 魏文이 중대초기에 벼슬하면서 진골귀족사회에서 일정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즉 의관은 삼국통일전쟁 기간 중에 장군으로 활약했고 뒤에 그 딸은 신라에 歸服해온 報德國王 安勝과 혼인했다. 또한 위문은 성덕왕 11년(712) 3월 집사부中侍에 취임하여 1년 반 가량 재임한 일이 있다.15) 하지만 정작 원성왕 개인의 경력으로는 상대등밖에는 달리 알려진 것이 없다. 즉 그는 혜공왕 16년(780) 4월 伊湌으로서 김양상이 거병할 때 적극 가담하여 큰 공을 세웠고, 김양상이 즉위하면서 곧바로 상대등에 임명되었다.

즉위 당시 이미 고령에 달했던 원성왕은 비록 음험한 성격이기는 했으나 정치적으로는 노련한 인물이었다. 그는 중대 말기부터 귀족들 사이에서 造塔·造寺 등 佛事활동이 성행한 데 주목, 즉위하자마자 政法典(일명 政官)을 정비하여 불교 교단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통제 의지를 내비쳤다.16) 하긴 그는 개인적으로는 불교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정치 이데올로기면에서는 중대의 군주들과 마찬가지로 유교정치를 지향했다. 그가 재위 4년 (788) 봄에 讀書三品科를 실시한 것은 그 현저한 例證이다. 독서삼품과는 國學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유교경전의 해독 수준에 따라 이를 上・中・下 세

¹⁴⁾ 李基白, 앞의 책(1974), 119~120쪽.

¹⁵⁾ 李基東, 앞의 책, 151쪽.

¹⁶⁾ 郭丞勳,〈新羅 元聖王의 政法典 整備와 그 意義〉(《震檀學報》80, 1995), 33~61쪽. 다만 이와는 달리 정법전의 설치를 종래 국가가 직접 불교계에 대해 통제를 가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승려들에 의한 자율적 운영을 인정한 획기적 조치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朴南守,〈사원성전과 불사의 조영체계〉(《新羅手工業史》, 신서원, 1996) 참조.

등급으로 구분하는 제도였다. 이는 일종 국학의 졸업시험과 같은 성격을 띤 것이었는데,17) 어쩌면 그 시험성적에 따라서 仕官하는 것을 제도화한 조치가 아니었을까고 생각된다.18) 《삼국사기》에 "前日에는 弓術로써 인물을 뽑더니이 때에 이르러 개혁했다"고 한 것을 보면 그 때까지는 국학 수료자에 대한 확고한 관리 임용규정이 없었던 듯하다. 뒤에 소성왕 원년(799) 3월에 靑州 居老縣(현 巨濟)을 學生祿邑으로 지정한 것은 국학에 녹읍을 지급한 것으로이해되며 역시 국학 진흥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李基東〉

2. 귀족사회의 분열과 왕위쟁탈전

1) 왕실가족에 의한 권력독점

앞에서 보았듯이 하대는 중대 전제왕권에 반감을 품은 내물왕 계통의 汎 眞骨귀족 연합세력에 의해 개막되었다. 또한 여기에는 金周元과 같은 태종무 열왕 계통의 일부 왕족도 가담했다. 혜공왕대의 대란 때에 전국의 96角干이 서로 무기를 들고 싸웠다고 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이미 중대 말기에 정계에 진출하고 있던 진골귀족의 수효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었다. 그런데 이 제 그 12代祖가 내물왕이라고 자처하는 원성왕 계통이 등장하면서 진골귀족의 의 족적인 기반은 한층 더 확대되었다. 이처럼 양적으로 확대된 진골귀족들 에게 권력을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 하대 왕권이 직면한 제1차적 과제였다.

원성왕은 즉위와 동시에 장남 仁謙을 태자로 책봉하여 왕위계승권자로 확정시켰다. 그러나 동왕 7년(791) 정월에 태자가 죽자 그 이듬해 8월 차남인 義英을 다시금 태자로 삼았다. 그런데 의영마저 동왕 10년 2월에 죽고 말았다. 그러자 왕은 인겸의 장남인 俊邕을 그 이듬해 정월 태자로 책봉했다.

¹⁷⁾ 李基白, 앞의 책(1986), 230쪽.

¹⁸⁾ 木村誠、〈統一新羅の官僚制〉(《東ァジァ世界における日本古代史講座》6, 學生社, 1981), 148~152等.

왕에게는 셋째 아들 禮英이 있었으나 준옹을 책봉할 당시 살아있었는지 어떤지는 확실하지 않다. 원성왕이 재위 14년(798) 12월 29일 죽자 결국 장손인준옹이 즉위하여 昭聖王이 되었다. 그러나 소성왕은 오래 재위하지 못했다. 왕은 재위 1년 반 만인 800년 6월에 죽었다. 이에 태자인 淸明이 즉위하여哀莊王이 되었다. 당시 왕은 13세였고 따라서 숙부인 兵部令 彦昇이 섭정으로 취임했다.

하대의 권력구조와 정치과정을 볼 때 무엇보다도 특징적인 현상은 왕실가족에 의해서 정치권력이 송두리째 장악되어 있는 점이다. 그것은 준옹과 언숭 형제가 조부인 원성왕 때 띠고 있던 관직을 보면 곧 알 수 있다. 즉 준옹은 아버지 인겸태자가 아직 살아있을 때인 원성왕 5년(789) 唐에 사신으로다녀와 大阿湌이 되었고, 그 이듬해 波珍湌으로 宰相이 되었으며, 아버지가죽은 직후인 원성왕 7년 10월에는 侍中이 되었다가 그 이듬해 8월 숙부인의영이 태자로 책봉될 때 신병으로 물러난 뒤 곧 병부령에 취임했다. 그리고의영이 죽자 태자에 책봉되었다. 한편 언숭은 역시 아버지 인겸태자의 在世時인 원성왕 6년에 대아찬이 되었고 동왕 7년 정월 아버지가 죽은 직후 반란을 일으킨 전 시중 悌恭을 제거한 공로로 迎湌에 승진했으며, 그 뒤 동왕 10년 2월 시중에 취임했다. 그리고 그는 형이 태자로 책봉된 해에는 伊湌으로 재상이 되었고 곧 이어 원성왕 12년 4월에는 병부령에 올랐다.

앞에서 본 것처럼 언승은 병부령의 자격으로 조카인 애장왕의 즉위와 동시에 섭정이 되었는데, 동왕 2년(801) 2월에는 종전까지 內省의 一局에 지나지 않던 御龍省을 독립시켜 일종 攝政府를 만들고 스스로 그 장관(私臣)에취임했다. 그는 곧 이어 상대등에 올라 정치의 실권을 완전히 장악했다. 이처럼 원성왕과 그의 후계자들은 태자를 정점으로 하여 매우 좁은 범위의 근친왕족들이 상대등을 비롯하여 병부령·재상·어용성사신·시중 등 요직을 독점하는 권력구조를 만들어냈다. 실로 이러한 요직은 모두 재상제도의 테두리 속에 포괄되는 것으로, 재상제도가 갖는 권력집중의 기능은 이미 원성왕때에 확립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흔히 전제왕권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¹⁾ 木村誠,〈新羅の宰相制度〉(《人文學報》118, 東京都立大, 1977), 25~33・35~38\.

중대의 권력구조 아래서도 찾아보기 힘든 권력집중 현상이었다. 그러므로 골 품제국가의 정치적 모순은 전시대에 비하여 한층 더 격화될 수밖에 없었다.

애장왕대의 정치는 당연히 섭정을 맡고 있던 숙부 언승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 왕대의 주요 치적으로서는 율령의 개정과 五廟制度의 확립을 들 수 있다. 애장왕 6년(805) 8월 조정은 公式 20여 조를 頒示했는데, 그 구체적인 법규의 내용은 잘 알 수가 없다. 다만 관리의 인사를 담당하는 位和府의 長·次官 직명이 이 해에 종래의 衿荷臣·上堂에서 각기 숙·劘이라는 漢式名으로 개정된 것이라든지 또는 四天王寺成典을 비롯한 奉聖寺・感恩寺・奉德寺・奉恩寺成典 등 寺刹 관계 관청의 장·차관직 역시 애장왕 때 위화부의 경우와 같은 명칭으로 바뀐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애장왕 6년을 기하여 漢化政策이 시도된 것을 집작할 수 있다. 비록 그 개혁의 규모에 있어서는 경덕왕 18년(759)의 官號개혁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개혁의 기본방향만은 경덕왕 때와 마찬가지로 한화정책을 통해 국왕의 권력집중을 꾀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다음 5묘제도에 있어서는 애장왕 2년 2월 근본적인 개혁이 단행되었다. 즉종래 永世不變의 廟主로 되어 있던 태종대왕·문무대왕을 5묘에서 탈락시키는 한편 애장왕의 高祖까지의 직계존속을 이에 대치했다. 비록 태종·문무양 대왕을 위해서는 따로이 二廟를 세웠으나, 어쨌든 이로써 명실상부한 5묘제가 확립된 것이다. 사실 중대 왕통을 단절시킨 선덕왕은 5묘제를 정할 때 태종·문무양 대왕의 존재 때문에 자신의 직계존속으로는 오로지 아버지만을 太廟에 入해시켰을 뿐이며, 원성왕도 그 즉위년(785) 2월에 5묘를 다시 정할 때 태종·문무양 대왕을 여전히 存置시키게 됨으로써 겨우 자기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만을 5묘에 입부시킬 수 있었다.2)

이같은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애장왕 2년 완성된 5묘제가 그 뒤 원성왕계 혈족집단에 끼친 영향은 매우 컸다. 왜냐하면 이로써 왕위계승에 있어 直系 상속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인식되었고, 나아가 이러한 직계 존중은 자연히 傍系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 내물왕계 혹은 태종무열왕계

邊太燮, 〈廟制의 変遷을 通하여 본 新羅社會의 發展過程〉(《歷史教育》8, 1964), 56~76쪽.

라고 하는 광범위한 씨족 연대의식을 약화시키게 됨은 물론, 원성왕계 내부의 혈족집단 자체를 점차 가족 규모의 작은 단위로 分枝化시킨 요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실로 830년대 후반의 苛烈한 왕위계승쟁탈전의 遠因은 여기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3)

2) 무열왕계의 반발과 김헌창의 난

애장왕 때 섭정으로서 정치상의 실권을 쥐고 있던 彦昇은 애장왕 10년 (809) 7월 19일 아우인 秀宗과 함께 난을 일으켜 왕을 시해하고 新王으로 즉위했다. 그가 곧 憲德王이다. 왕은 정치적으로 야심이 많았으나 불행하게도즉위한 지 오래지 않아 극심한 사회경제적 위기에 직면했다. 즉 가뭄과 물난리가 連年 잇따라 발생하여 일찍이 경험한 적이 없는 식량기근을 야기시켰고, 이에 따라 많은 유민이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조정은 미증유의 재난과기근을 당하여 거의 속수무책일 따름이었다.

사실 식량기근은 비단 헌덕왕 때만 있었던 현상은 아니다. 여느 시대와 마찬가지로 신라통일기를 통해서 水災와 旱災는 마치 전염병처럼 만연했다. 그렇지만 국가권력이 강대했던 중대 전반기에는 그래도 이같은 위기를 잘 극복했다. 가령 성덕왕 때는 흉년이 들면 곡식을 풀어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만한 역량이 있었다. 당시 거듭된 재해로 말미암아 기근이 들자 조정에서는 생계가 어려워진 貧民을 救恤하기 위해 동왕 6년(707) 정초부터 7월말까지 7개월 동안 한 사람에게 粟 3升씩을 지급하여 모두 30만 500石을 방출할 정도였다. 하대 초창기인 원성왕 때만 하더라도 조정은 비록 제한된 범위에서 나마 賑恤策을 쓸 수가 있었다. 즉 동왕 2년(786) 9월 京都에 기근이 들자 粟 33,240石을 내어 賑給했고, 10월에 다시 粟 3만 3천石을 내어 나눠주기도했다. 그 뒤에도 동왕 5년 정월, 6년 5월, 12년 봄에 漢山州・熊川州 등 지방과 서울에 기근이 들자 粟穀을 내어 구제했다.

그러던 것이 헌덕왕 때가 되면 사정이 악화될 대로 악화되어 있었다. 왕

李基東、〈新羅 下代의 王位繼承과 政治過程〉(《歷史學報》85, 1980;《新羅骨品 制社會와 花郎徒》,一潮閣, 1984, 154等).

은 2년(810) 2월 使者를 파견하여 국내의 隄防을 수축하게 하는 등 농업과 관계가 깊은 수리시설에 관심을 기울이기도 했다. 그런데 6년 5월 나라 서쪽 지방에 홍수가 나자 왕은 관리를 보내어 수해를 입은 州郡의 인민을 위로하는 한편 1년간 조세와 頁物을 면제하는데 그쳤다. 그 이듬해 8월 서쪽 변경 州郡에 큰 기근이 발생하여 도적떼가 봉기하자 군대를 보내어 討平에 주력할 뿐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 동왕 9년(817) 10월에 굶어 죽은 사람이 많이 발생하자 왕은 주군에 명하여 창고의 곡식을 내어 구제케 했다고하지만 그 성과는 잘 알 수 없다. 다시 11년 3월에 草賊이 곳곳에서 일어나자 조정은 그 진압에 힘을 쏟았을 뿐이다. 12년 봄과 여름이 가물은 결과 겨울에 기근이 발생, 그 이듬해 봄에는 기근에 견디지 못해 자식을 팔아 自活하는 사람이 발생하기까지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한편《구당서》신라전에의하면 헌덕왕 8년 신라에 기근이 들자 唐의 浙東지방에 건너와 먹을 것을 구한 자가 170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또한 이 시기 일본측의 기록을 보더라도 811년(한덕왕 3년) 8월부터 824년 5월까지 전후 13회에 걸쳐 모두 826명의신라인이 일본열도에 漂着 당도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 헌덕왕 7년과 동왕 11년 두 차례에 걸쳐 초적이 봉기하는 등 민심이 매우 흉흉해진 기회를 이용하여 熊川州都督으로 있던 金憲昌이 대규모의 반란을 일으켰다. 김헌창은 金周元의 아들이었다. 비록 김주원 자신은 선덕왕 6년(785) 원성왕과 왕위계승을 둘러싸고 경쟁을 벌이다가 실패하여 강릉으로은퇴했으나 그의 두 아들은 원성왕계의 조정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것은 김주원이 태종무열왕계로서는 이례적으로 혜공왕 말년에 반왕파에 가담하여혜공왕 16년(780)의 정변에서 큰 공을 세웠기 때문이었다. 사실 하대 왕실은 태종무열왕계를 정치에 참여시킴으로써 정변의 합법성을 보장받으려 한 듯하다. 이에 따라 김헌창의 형으로 짐작되는 宗基는 원성왕 6년(790) 정월부터이듬해 10월까지 시중직을 역임했고, 그 아들 璋如도 헌덕왕 8년 정월 시중에 취임하여 1년간 재임했다. 김헌창 자신도 헌덕왕 5년 정월 武珍州도독에

⁴⁾ 佐伯有清、〈朝鮮系氏族とその後裔たち〉(《古代史の謎を探る》, 讀賣新聞社, 1973), 197~198等.

취임한 뒤 이듬해 8월 시중으로 영전되었고, 동왕 8년(816) 정월에는 조카인 장여에게 시중직을 넘기고 壽州도독으로 전출되어 장기간 근무하다가 동왕 13년 4월 다시 웅천주도독으로 전보되었다.5)

김헌창은 헌덕왕 14년 3월, 37년 전에 아버지 김주원이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그 대신 원성왕이 즉위한 것은 불법이었다고 하면서 웅천주의 治所를 본부로 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그는 국호를 長安, 연호를 慶雲이라 하여 반란의 기치를 높이 세웠다. 그의 반란군은 최초 武珍・完山・菁・沙伐의 4州 도독과 國(中)原・西原・金官의 3 小京 仕臣 및 그 밖에 여러 군현의 수령을 협박하여 반란세력으로 끌어들이려 했다. 그러나 곧 청주도독 向榮이 탈주에 성공하고 完山州長史 崔雄 등이 왕경으로 달려와 반란 사실을 고함에 따라조정은 곧바로 반란 진압의 태세를 갖추게 되었다.

당시 조정은 반란에 기민하게 대처했다. 특히 왕의 동생으로 반란이 일어나기 직전 상대등에서 副君으로 승격한 金秀宗의 활약이 컸다. 조정은 一吉 湌 張雄을 선발대장으로 파견하여 반란군의 주력을 추적하게 하고 곧 이어 잡찬 衛恭・파진찬 悌凌이 이끄는 本隊를 출동시켰다. 그런 다음 다시 이찬 金均貞・잡찬 金雄元・대아찬 金祐徵(김균정의 아들)으로 하여금 3軍을 통솔, 본격적인 진압에 나서도록 조치했다. 이 때 明基와 安樂 두 화랑도 각기 종군을 신청한 뒤 반란 토벌에 종사했다. 당시 중앙군의 반란 진압상황을 보면 장웅의 선발대는 최초 반란군의 一隊를 道冬峴에서 포착, 이를 격파하고 조금 뒤에 도착한 위공・제릉의 본대와 합류했다. 군 주력은 三年山城(報恩)의 반란군을 격파한 다음 속리산 방면으로 진출하여 반란군의 支隊를 섬멸했다. 한편 3군 주력부대는 반란군의 지대를 星山에서 격파한 뒤 모든 토벌부대와 합세하여 반란세력의 근거지인 熊津으로 향했다. 진압군은 웅진에 도착하여 반란군과 격전을 벌여 크게 이겼고 이어 웅진성 공격에 들어갔다. 성을 포위

^{5) 《}三國史記》권 10, 新羅本紀 10, 애장왕 8년 정월조에 "伊湌 金憲昌(一作貞) 爲 侍中"이라 한 것을 근거로 하여 이를 김헌창의 경력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井上秀雄,《古代朝鮮》, 日本放送出版協會, 1972, 237쪽 및《新羅史基礎研究》, 東出版, 1974, 388 · 461쪽), 이는 金憲貞의 경력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는 李基白, 〈新羅 下代의 執事省〉(《新羅政治社會史研究》, 一潮 閣, 1974), 177쪽 및 李基東, 앞의 책, 156쪽, 주 33 참조.

한 지 10여 일에 성이 함락되기 직전 김헌창이 자살함으로써 반란은 마침내 진압되었다. 이 반란에 연좌되어 죽음을 당한 김헌창의 宗族과 黨與는 모두 239명에 달했다.

그 뒤 헌덕왕 17년(825) 정월에 김헌창의 아들 梵文이 高達山의 산적 壽神 등 1백여 명과 더불어 또다시 반란을 일으켰다. 그들은 수도를 平壤(지금의서울 부근)에 정하려고 북한산성을 공격했으나 漢州도독 聰明이 거느린 군대에 의해서 곧바로 진압되었다. 이처럼 두 차례에 걸친 김헌창 부자의 반란은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것이 앞으로 닥쳐올 사태의 진전에 끼친 영향은 매우 컸다. 첫째로 이 반란은 豪族세력의 지방할거적 경향을 크게 촉진시켰고, 둘째로는 830년대 후반 원성왕계 내부의 왕위계승쟁탈전을 유발하는한 심리적 요인이 되었다.

3) 범진골 귀족세력 화합책의 시도

헌덕왕이 재위 18년(826) 10월에 죽자 副君의 자리에 있던 그의 동생 金秀宗이 즉위했다. 그가 바로 與德王이었다. 즉위 당시 50세였던 왕은 다정다감한 성품이었지만,6) 한편으로는 비범한 지략과 결단력을 갖춘 인물이었다. 왕의 정치적 경험 또한 매우 풍부했다. 왕은 애장왕 5년(804) 정월 28세의 젊은나이로 집사부시중이 되어 3년간 재임했다. 동왕 6년 8월에 공포된 공식 20여조 제정에 그가 직접 관계했을 것이 틀림없다. 왕은 그 뒤 헌덕왕 11년 (819) 2월 상대등에 취임했다가 동왕 14년 정월 副君이 되어 月池宮에 들어갔다. 이 부군제도는 전례없는 것으로 어쩌면 태자에 준하는 위치였을 것으로 집작된다.

흥덕왕이 즉위할 무렵 국내외 정세는 무척 다사다난했다. 대외적으로는 唐제국이 安史의 대란(755~763)을 겪은 뒤 藩鎭의 발호를 제어하지 못해 지 방통치가 크게 느슨해졌고, 이 틈을 타서 중국의 해적선이 서해상에 창궐했

⁶⁾ 홍덕왕릉비의 斷石에 '壽六十是日也'라 한 것이 보이는데, 이는 정녕 왕릉의 주 인공인 홍덕왕 자신의 享年을 가리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閔泳 珪、〈新羅興德王陵碑斷石記〉(《歷史學報》17·18, 1962), 626쪽 참조.

다. 이들은 신라의 對唐 항로를 위협했을 뿐 아니라 신라의 무역선을 약탈했다. 더욱이 중국 해적선들은 신라의 근해에 출몰하여 서부 변경지역 주민을 납치하여 노예로 매매하기까지 했다. 또한 文王 때에 국력을 크게 확장한 渤海는 9세기에 들어와 적극적인 남하정책을 추진하여 신라의 北邊을 위협했다. 특히 발해 역사상 최대의 전성기를 연출한 宣王이 즉위하면서 신라는 발해의 남침 위협에 시달리게 되었다. 한편 일본과는 오래 전부터 공식적인 외교관계가 끊긴 상태였다. 그런데 발해는 동해상을 통해서 일본과 긴밀한 교섭ㆍ통상관계를 줄곧 유지하고 있었다.

이제 시야를 대외관계에서 국내 문제로 돌려 보면 심각한 위기상황이 소리없이 양성되고 있었다. 중앙의 진골귀족세력은 바야흐로 그 최대의 전성을 누리고 있었으나, 김헌창의 난에서 보았듯이 귀족 상호간의 사회 연대성은 여지없이 파괴되어 그 자체 심한 분열의 낌새를 드러냈다. 한편 지방 호족세력이 성장하여 차츰 割據的 성격을 띠게 됨에 따라 집권체제는 약화의 길을 걷지 않을 수 없었다. 더욱이 중앙귀족과 지방 세력가들의 농장 경영이 발달함에 따라 自營小農民은 광범하게 몰락했다. 그리하여 진골귀족세력의 연대성을 회복하고 律令체제를 강화하는 일이 홍덕왕의 정치적 과제가 되었다.7)

흥덕왕 정권은 어떤 의미에서는 국왕과 동생인 상대등 金忠恭의 兩頭체제였다고 할 수 있다. 흥덕왕은 즉위할 당시 이미 50세의 고령이었고 건강 또한 그리 좋지 않았다. 더욱이 즉위한 지 2개월만에 왕비를 잃고 상심한 나머지 再娶까지 단념한 왕에게는 왕위를 물려줄 자식조차 없었다. 그리하여 고독한 나날을 보내야 했던 왕이 믿고 政事를 의논할 상대는 동생인 충공밖에는 달리 없었다. 충공은 헌덕왕 14년(822) 정월 상대등에 오른 뒤 政事堂에서 직접 정무를 총괄해 왔고, 흥덕왕이 즉위한 뒤에도 이례적으로 유임되었다. 그는 흥덕왕과는 대조적으로 아들 金明 외에 여러 명의 딸이 근친왕족들과 혼인하여 가족적으로도 매우 번성했다. 딸 중의 하나인 貞嬌는 헌덕왕의 太子妃가 되었고, 다른 딸은 憲貞의 아들 悌隆과 혼인했으며 또 다른 딸은 均貞의 후처가 되어 誼靖(憲安王)을 낳았다.

⁷⁾ 李基東、〈新羅 興德王代의 政治의 社會〉(《國史館論叢》21, 國史編纂委員會, 1991), 97~131

하대에 들어오면서 근친왕족들이 국가의 樞要의 직을 독점한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이는 왕실가족의 분열을 막는 동시에 일반 진골귀족세력을 견 제하는데 효과적이었다. 흥덕왕은 근친왕족 우대의 관례에 따라 숙부인 禮英 의 자손들을 요직에 등용했다. 왕의 사촌형제 가운데 헌정은 이미 오래 전에 건강이 악화되어 죽은 듯한데, 다만 균정만은 아직 건재했다. 균정은 헌덕왕 의 처남으로 일찍부터 조정에서 중시되었다. 그는 헌덕왕 4년(812) 봄에 侍中 이 되었다가 동왕 6년 8월 김헌창과 교체할 때까지 재임했다. 그 뒤 김헌창 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그는 3군으로 편성된 진압부대의 主將으로 활약했다. 또한 앞에서 본 것처럼 그는 전처가 죽은 뒤 충공의 딸과 재혼하기까지 했 다. 이같은 특수한 인연으로 그는 결국 흥덕왕 10년(835) 2월 병으로 죽은 충 공의 뒤를 이어 상대등이 될 수 있었다. 한편 균정의 전처 소생인 우징도 김 헌창의 반란 때 부친과 함께 나란히 진압군 사령관의 일원으로 출동할 만큼 이미 성장해 있었다. 그는 흥덕왕 3년 정월 대아찬의 관등으로 집사부시중이 되었다가(재임 중인 829년 執事省으로 개명됨) 동왕 6년 정월 지진이 발생한 뒤 일단 사임했다. 그러나 그는 동왕 9년 정월에 다시 시중에 취임했다. 이는 신라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다. 다만 그는 1년 뒤 부친이 상대등이 되자 물 러났다. 그의 후임 시중이 바로 19세의 金明이었다. 그러니까 흥덕왕은 사촌 동생인 균정을 상대등에 기용함과 동시에 시중에는 조카인 김명을 임명하여 仁謙太子系와 禮英系의 세력균형을 꾀한 듯하다.

근친왕족뿐 아니라 유서깊은 태종무열왕계의 후손, 그 중에서도 특히 하대의 개창에 적극 협력한 김주원 일가에 대한 정치적 배려가 또한 요망되었다. 비록 김헌창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敗死하고 말았으나 반란에 가담하지 않은 김종기 집안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계에 등장시켜 화합을 과시할 필요가 있었다. 당시 김종기의 두 아들 장여와 貞茹는 이미 시중 등 요직을 역임하고 은퇴한 뒤였다. 그리하여 그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발탁되었다. 정여의 아들 金陽(808~857)은 흥덕왕 3년 固城郡太守로 출발하여 흥덕왕 재위 10년 기간 중에 中原小京大尹・武州도독에까지 올랐으며, 璋如의 아들 金昕(803~849)은 헌덕왕 14년 당에 사신 겸 宿衛學生으로 다녀온 뒤 南原태수를 거쳐 康州도독에까지 승진했다.

홍덕왕은 또한 金庾信 집안의 후예들에 대해서도 어떤 정치적 배려를 하지 않았을까 짐작된다. 김유신을 興武大王으로 追封한 시기에 대해서는 異說도 있으나 역시 홍덕왕 때로 봄이 옳을 듯하다. 당시는 김헌창의 난을 겪은지 얼마 안되는 때였고, 한편 서해상의 항해의 안전을 위해서 변경 해안지대에 軍鎭을 설치하여 군사력을 집중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던 때였다. 더욱이홍덕왕 때에도 예외없이 가뭄과 기근이 잇따라 발생하여 국내 치안이 위협받고 있었다. 이같은 형편이었으므로 朝野에 군사적 기풍을 진작시킬 필요가 있었고, 나아가 爲國盡忠의 모범으로써 선전하는 데 김유신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는지도 모른다. 무엇보다도 당시 될 수 있는 한 근친왕족 이외에 일정한범위 안에서 전통적인 가문 출신들을 정치에 참여시키려고 애쓰고 있던 정치적 분위기로 미루어 볼 때 김유신에 대한 대왕 추봉조치는 그 집안 사람들에 대한 일종 우대책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생각된다.

4) 원성왕계 내부의 왕위계승쟁탈전

김헌창의 반란으로 말미암아 초래된 귀족사회의 분열 현상을 극복, 이를 再縫合하려는 홍덕왕의 범진골 귀족세력 화합책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다만 홍덕왕 10년(835) 2월 왕위계승의 제1후보자였던 상대등 충공의 돌연한 죽음은 근친왕족 간의 세력균형에 적신호가 되었다. 왕은 후임 상대등에 사촌동생인 균정을 임명했다. 당시 소생이 없는 왕의 처지에서 보면상대등 임명은 곧 후계자 지명이나 다를 바 없었다. 어쩌면 왕은 후임 상대등으로 될 수 있으면 인겸태자 계통에서, 즉 자신의 조카들 가운데서 지명하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홍덕왕 10년 당시 그의 조카로는 충공의 아들인 대아찬 김명밖에는 없었다. 다만 김명은 당시 19세로⁸⁾ 부친의 자리를 승계하기에는 연령과 정치적 관록이 크게 부족했다. 따라서 왕으로서는 비록예영 계통이기는 하지만 그 자신 시중 경력과 軍功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또한 조카사위이기도 한 균정 외에 달리 상대등 후보자를 찾을 수 없었다.

⁸⁾ 金明(민애왕)은 桐華寺 毘盧庵 3층석탑에서 발견된 舍利壺의 銘文에 의하면 839 년 정월 23일 23세로 죽은 사실이 보여 835년 현재 19세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왕은 이처럼 상대등직을 균정에게 양보함과 동시에 김명을 시중에 임명하여 예영 계통에 대한 일종 견제를 꾀했다.

그로부터 2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홍덕왕은 재위 11년(836) 12월에 60세로 죽었다. 왕은 먼저 죽은 왕비와 합장할 것을 유언으로 남겼을 뿐 후계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었다. 이러한 경우 상대등직에 있는 균정이 즉위하는 것이 순리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균정 자신도 이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고 주변에는 강력한 지지세력도 확보해 놓고 있었다. 즉 시중을 역임한아들 우징을 비롯하여 妹婿인 禮徵 그리고 무주도독을 역임한 김주원계의 金陽 등이 그를 옹립했다.

그러나 시중직에 있던 김명이 균정의 즉위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그는 아찬 利弘, 裝置伯 등을 자파로 끌어들여 균정의 조카이며 동시에 자신의 妹夫이기도 한 悌隆을 왕으로 추대했다. 이 제륭의 경력은 알 수가 없는데, 다만 그의 아버지인 헌정은 애장왕 10년(809) 왕을 시해할 때 시중의 직에 있었고 헌덕왕초에는 國相・兵部令兼修城府令의 요직에 있었다. 헌정은 헌덕왕 11년 정월에 신병으로 보행조차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그 뒤 멀지않아 죽은 듯하다. 따라서 제륭은 홍덕왕 11년 당시에는 이미 독립된家를 거느리고 있었을 것이 틀림없다.

균정과 제륭을 옹립하려는 두 파의 대립은 闕內에서의 무력대결로까지 발전했다. 균정은 지지자들로부터 왕으로 추대받아 積板宮에 들어가 族兵의 호위를 받고 있었다. 그러자 제륭을 추대하는 김명·이홍 등이 군대를 끌고 와서 궁을 포위했다. 김명 일파의 병력이 숫적으로 우세했다. 결국 이 流血劇에서 균정이 살해되는 비운을 맞았다. 김양은 배훤백이 쏜 화살에 다리를 맞아 쩔뚝거리며 포위망을 뚫고 피신했다. 이에 왕위계승쟁탈전은 제륭 일파의 승리로 돌아갔다. 제륭은 즉위하여 僖康王이 되었다. 그는 즉위와 동시에 시중 김명을 상대등에, 아찬 이홍을 시중에 각각 임명했다. 하지만 정치적 실권은 김명이 장악했다. 결국 동왕 3년(838) 정월 김명과 이홍은 쿠데타를 일으켜 희강왕을 몰아냈다. 찬탈자들이 군대를 일으켜 왕의 측근에 있던 자들을 죽이자, 왕은 무사하지 못할 것을 깨닫고 스스로 궁중에서 목매어 자살했다. 이에 22세의 김명이 새로운 왕으로 즉위했다. 그가 곧 閔哀王이었다.

민애왕 정권은 꼭 1년간 존속했다. 그 동안 왕의 적대세력은 淸海鎭(莞島)에 속속 집결했다. 홍덕왕 3년(828) 4월 장보고의 건의를 받아들여 청해진의설치를 허가할 당시 우징은 집사부 시중직에 있었으므로, 청해진과는 특수한인연이 있었다고 짐작된다. 희강왕 2년(837) 5월에 우징이 가족과 殘兵을 거느리고 청해진에 가서 大使 張保皐(일명 弓福)에게 의지하자 6월에 예정・良順 등이 도망하여 우징과 합류했고, 민애왕 원년(838) 2월에는 김양이 군사를모집하여 역시 청해진으로 들어가 거사 모의에 참여했다. 한편 고려시대의승려 天因이 쓴 〈天冠山記〉의에 의하면, 이 때 화엄종 승려인 洪震은 평소알고 지내던 우징이 완도에 피신하자 서로 연락을 취하면서 長興 天冠寺에서 華嚴神衆의 威力을 빌어 우징을 도왔다고 한다. 민애왕의 찬탈 소식은 장보고의 궐기를 촉구하는데 절호의 명분을 제공했다. 우징은 민애왕이 자신의아버지를 죽인 원수일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는 임금을 죽인 역적이라고 장보고를 끈질기게 설득했다. 마침내 장보고는 우징을 도와 민애왕 정권을 타도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군사 5천 명을 오랜 친구인 鄭年에게 주어 우징 일파의 擧兵에 합류하도록 지시했다.

우정 일파의 叛軍은 김양을 총사령관으로 하여 궐기했다. 그는 민애왕 원년 12월 平東장군이 되어 정년을 비롯한 閻長・張弁・駱金・張建榮・李順行등 여섯 장수와 함께 출동했다. 이 때 金亮詢(良順)이 武州 군대를 이끌고 來會했다. 반란군이 무주 鐵冶縣(羅州郡 南平面)에 다다르자 조정은 州의 大監金敏周로 하여금 맞아 싸우게 했다. 낙금과 이순행은 기병 3천으로 돌격을 감행하여 정부군을 거의 섬멸했다. 반군은 경주를 향해 신속하게 이동했다. 해가 바뀌어 민애왕 2년 윤정월 19일에 반군은 達伐(대구)에 이르렀다. 왕은이찬 大昕, 대아찬 允璘・嶷勛 등을 명하여 군사를 이끌고 가서 막게 했다. 그러나 정부군은 반군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정부군은 一戰에 참패하여 죽은 자가 절반이 넘었다. 이 때 왕은 경주 서쪽 교외에 있다가 주위의 신하들이 모조리 달아나자 홀로 月遊宅으로 피신했다. 이 달 23일 민애왕은 반란군 병사에 의해 피살되었다. 우징은 반란군에 추대되어 왕으로 즉위했다. 그가

⁹⁾ 徐居正,《東文選》 권 68.

바로 神武王이었다.

신무왕은 일찍이 헌덕왕 14년(822) 김헌창의 반란 때 왕군의 군사령관으로 진압에 공을 세웠고, 그 뒤 두 차례나 시중을 역임하는 등 정치·군사상의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부친 균정이 왕위계승쟁탈전에 敗死 한 뒤에는 新興 청해진의 군사력에 착안, 이를 이용하여 왕위계승쟁탈전에 재도전하는 등 그의 정치적 식견은 결코 凡常하지 않았다. 또한 격전 끝에 민애왕을 타도한 승리자로서 그가 敗者側에 대하여 취한 아량과 관대한 조 치는 그의 王者로서의 자질을 잘 보여준다. 그는 피살된 故王을 禮로써 장사 지냈으며 또한 달벌전투에서 민애왕의 10만 군을 지휘한 바 있는 敗將 이찬 대흔, 대아찬 嶷勛 등에 대해서도 너그러운 조치를 취했다. 그리하여 이들은 산속으로 들어가 은퇴생활을 즐길 수 있었다.10) 이처럼 신무왕은 그 뛰어난 정치적 재간으로 큰 기대를 모았으나 재위 반년 만인 이 해 7월 23일 죽고 말아 경륜을 펴 볼 수가 없었다. 이에 태자이던 慶膺이 즉위하니 곧 文聖王 이었다.

문성왕대초에는 父王 옹립의 최대 공신인 장보고와의 사이에 納妃 문제, 노예무역 문제를 둘러싸고 차츰 마찰이 생기기 시작하여 긴장감이 돌기도했다. 다만 조정이 機先을 제압하여 동왕 3년(841) 혹은 8년에 염장으로 하여금 장보고를 암살하게 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위기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로써 왕실은 일단 안정을 찾게 되었으나, 동왕 9년 5월에는 신무왕 옹립에 큰 공을 세운 전 시중 김양순이 파진찬 興宗 등과 더불어 반란을 꾀하다가 伏誅된 일이 있고, 다시 동왕 11년 9월에는 이찬 金式이 대흔 등과 더불어 역시 반란을 꾀하다가 복주되는 등 왕위계승쟁탈전의 후유증은 완전히

¹⁰⁾ 大昕은 김양의 從兄인 金昕(字는 泰)과 이름이 같고 또한 839년 정월 당시의 김흔의 직책 내지 임무와도 일치하고 있다. 다만 다른 점이라면 대흔이 849년 9월 반란을 꾀하다가 伏誅된 반면 김흔은 小白山에서 승려들과 놀다가 847년 8월 27일 山齋에서 병으로 죽은 점이다. 또한 대아찬 嶷勛은 智證大師 道憲(824~882)이 17세 되던 해(840)에 그를 僧籍에 넣어 준 韓粲(대아찬) 金嶷勳과 관등과 인명이 같아 동일인으로 짐작된다. 그렇다면 그 역시 김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산중에서의 은퇴생활이 허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李基東, 앞의 책, 167~168쪽).

청산된 것이 아니었다. 문성왕 17년(855) 4월 근친왕족들이 주동이 되어 경주 남산 昌林寺에 無垢淨塔을 건립한 것도 당시 잇따른 내란과 재난 속에서 국 가의 安泰를 빌기 위한 염원에서였다.

문성왕은 재위 19년 9월 숙부인 상대등 誼靖(義正・義琮・祐靖 등으로 표기됨)을 후계자로 지명하고 죽었다. 이에 의정이 즉위하니 곧 憲安王이었다. 그는 신무왕의 異母弟로 어머니는 충공의 딸이었다. 그는 흥덕왕 11년(836) 정월에 唐에 謝恩使 겸 宿衛로 파견된 바 있으며, 문성왕이 즉위한 직후에 시중을 역임하고, 동왕 11년(849) 정월에는 상대등에 취임하여 즉위 당시까지 재임했다.11)

문성왕·헌안왕 양대에는 장래에 대하여 밝은 전망을 내릴 수 있는 사실도 있었다. 그것은 지난날 왕위계승쟁탈전에서 서로 무기를 들고 싸웠던 헌정·균정 양계가 타협점을 찾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문성왕의 여동생과희강왕의 아들 啓明이 혼인했다. 계명은 문성왕 10년에 김양의 뒤를 이어 집사성시중이 되었고, 그 아들 膺廉은 헌안왕의 사위가 되었다가 왕위를 잇게되었다. 바로 景文王이었다.

이처럼 경문왕의 즉위로 왕통은 균정계에서 헌정계로 넘어갔는데, 이는 균정계 진골귀족의 입장에서 볼 때 큰 불만이었던 듯싶다. 경문왕대에 세 차례나 일어난 왕족들의 반란 음모는 어쩌면 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즉 동왕 6년(866) 정월에 왕자 趢을 태자로 책봉한 뒤 이 해 10월 이찬允興이 동생들인 叔興·季興과 더불어 역모를 꾀하다가 발각되어 일족이 주살되었고, 8년 정월에는 이찬 金銳・金鉉 등이 역시 역모를 꾀하다가 주살되었다. 그런데 김예는 문성왕의 從弟로서 동왕 17년 昌林寺에 無垢淨塔을 건립할 당시 熊州 祁梁縣(牙山郡 新昌面) 현령이었다. 또한 경문왕 14년 5월 이찬 近宗이 역모를 꾀해 궁궐을 범하자 왕은 禁軍을 동원하여 이를 격파했는데, 그 역시 근친왕족이 아니었을까 짐작된다.

〈李基東〉

¹¹⁾ 헌안왕의 경력에 대한 고증은 李基東, 위의 책, 169~171쪽 참조.

3. 정치개혁의 실패

1) 율령의 개정을 통한 집권체제의 정비 시도

신라는 법흥왕 7년(520)에 중국 律令을 도입 수용하기 시작한 이래 기존의 族制的인 사회조직과 마찰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국가체제를 확립해 갔다. 말하자면 그것은 처음부터 제한적이고도 타협적인 율령제 수용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율령을 수용할 당시인 中古시대의 왕권이 상대적으로 미약했 던 데에 그 근본원인이 있었다. 한편 골품제도는 이 율령의 보장을 받음으로 해서 신라사회 전체 속으로 차츰 조직화·체제화하는 방향으로 전개 확산되 어 갔다. 실로 골품체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게 된 裏面에는 이처럼 율령제 도의 뒷받침이 있었던 것이다.1)

그런데 삼국통일 후 율령제도를 기반으로 하여 왕권강화를 꾀하려던 야심적인 군주들에게 있어서 진골귀족의 절대적인 우월성을 법적으로 보장한 골품제도는 개혁정치의 질곡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경덕왕이 필사적으로 추구한 漢化政策이란 필경 이 골품제도를 어떤 형태로건 간에 극복하여 율령제를 그 본래의 정신대로 정착시키려는 노력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그간 율령제도의 뒷받침을 받아 이미 강고한 토대를 구축한 골품체제의 장벽에 부딪쳐 끝내 성공을 거둘 수 없었다.2)

시대가 바뀌어 중대가 끝나고 하대가 개막되었다. 하대는 비록 태종무열왕계로부터 소외당한 범진골귀족 연합세력에 의해서 개창되었지만, 앞에서보았듯이 이데올로기 면에서는 유교사상에 토대를 둔 율령체제 강화라는 중대의 정치적 지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원성왕이 동왕 4년(788) 讀書三品科를 제정하여 國學 출신자의 진출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라든지, 소성

¹⁾ 李基東、〈新羅의 骨品制度와 日本의 氏姓制度〉(《歷史學報》94·95, 1982), 138 ~139쪽

李基東、〈新羅 中代의 官僚制의 骨品制〉(《震檀學報》50, 1980;《新羅骨品制社 會의 花郎徒,一潮閣, 1984, 128~141쪽).

왕이 동왕 원년 국학에 禄邑을 지급한 것 등은 그 현저한 징표라고 할 수 있다.

그 뒤 애장왕 6년(805) 8월에 조정은 公式 20여 조를 개정 반포했다. 《三國史記》권 38, 職官志 上에는 그 내용의 일부가 실려있는데, 이에 의하면 관리의 인사를 담당하는 位和府를 비롯한 四天王寺成典 이하 모든 성전의 장·차관 직명이 衿荷臣·上堂과 같은 신라 고유의 이름으로부터 중국식의 수·卿으로 개칭되었다. 이와 동시에 例作府·船府·賞賜署 등 여러 관청의 大舍 이하 史 등 하급 관직에 대한 일부 감원조치가 단행되었다. 이 공식 개정이 단행될 당시의 집사부시중이 김수종으로, 뒤에 흥덕왕이 되었다.

앞에서 보았듯이 흥덕왕은 김헌창의 난으로 말미암아 초래된 진골귀족사회의 분열 현상을 극복하고자 그 화합책을 모색했다. 왕은 이에서 그치지 않고 하대에 들어와 느슨해진 신분체제 및 집권체제를 정비·강화하기 위해일련의 개혁정치를 꾀했다. 왕의 개혁의지는 무엇보다도 동왕 9년(834)에 반포된 敎書 내용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는데, 安康에 있는 왕릉비의 斷石 명문에도 '格式是皆'라는 구절이 보여 흥덕왕 때 格式의 편찬 내지 수정작업이진행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홍덕왕 때의 官制개혁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동왕 4년 종래의 집사부를 집사성으로 개칭한 점이다. 이는 그 명칭으로 미루어 볼 때 당의 三省制를 모방한 조치로 일단 이해된다. 다만 명칭을 고친 배경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어떤 연구자는 시중직 자체의 변질이 집사부의 성격을 변하게 한 결과 部를 폐지, 집사성으로 승격시킨 것으로 보았다. 즉 하대에 들어 오면서 선덕왕을 비롯한 여러 왕이 시중을 역임했고, 9명의 상대등이 시중을 지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시중→상대등→국왕으로의 승진의 길이 열리게되어 집사부의 정치권력이 강화된 결과 이를 집사성으로 고쳐 다른 상급관청을 지배하는 당의 尚書省과 비슷한 기능을 갖는 위치로 승격시킬 필요가 있었다는 견해이다.3) 그러나 이와는 달리 집사부는 당의 門下省의 기능과 비슷하며 그 장관인 시중은 문자 그대로 門下侍中과 비교될 수 있다는 견해

³⁾ 井上秀雄、〈三國史記にあらわれた新羅の中央行政官制について〉(《朝鮮學報》51, 1969;《新羅史基礎研究》, 東出版, 1974, 262~263等).

도 있다. 즉 이에 의하면 원성왕 5년(789) 9월 집사부의 하급관리가 현령 인 사에 대하여 論駁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집사부의 기능은 문하성과 비교될 수 있다고 한다.4)

집사부와 그 후신인 집사성이 당의 3성 가운데 과연 어느 관청과 비슷한가 하는 점은 여전히 의문이다. 다만 경덕왕 18년(759) 신라의 대부분의 관청이름을 唐風으로 고칠 때도 의연히 종래의 명칭을 고수한 바 있는 집사부가 흥덕왕 때 이르러 중국식으로 개칭된 것은 매우 흥미있는 점이다. 이는 이때에 이르러 신라조정이 중국식의 國制(statecraft)를 단순히 모방하려 한 때문이라기 보다는 뭔가 당시의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 한 데서 취해진조치일 것으로 생각된다. 다 아는 것처럼 경덕왕 때 관청 이름과 관직이름을 중국식으로 고친 것은 同王代의 한화정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곧 경덕왕의 개혁정치의 핵심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렇다면 흥덕왕 때의집사성으로의 개명도 이와 같은 역사적 맥락에서 파악될 수 있는 것이다.

흥덕왕의 개혁정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동왕 9년(834)에 반포된 교서의 내용이다. 교서의 첫머리에 "사람은 上下가 있고, 지위는 奪卑가 있으며 명칭과 法式은 같지 않고 의복도 다르다. 그런데 지금 풍속이 점점 각박해지고 백성들은 다투어 사치·호화를 일삼고 다만 外來品의 珍奇한 것만을 숭상하고 도리어 토산품의 야비한 것을 싫어하니, 예절이 참람해지는 데 빠지고 풍속이 파괴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舊章에 따라 嚴命을 베푸는 바이니, 그래도 만일 고의로 범하는 자가 있으면 國法을 시행할 것이다"로 되어 있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삼국사기》권 33, 잡지 2, 色服·車騎·器用·屋舍조에 상세히 보인다. 당시는 소위 金入宅의 전성에서 잘 알 수 있듯이골품제의 사회적 규범이 해이해지고 특히 귀족층의 사치풍조가 만연했을 때이므로 이 교서는 지배층의 紀綱을 바로잡는 데 그 일차적인 목적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⁴⁾ 木村誠、〈統一新羅の官僚制〉(《東アジア世界における日本古代史講座》6, 學生社, 1981), 144~145・156・162쪽. 李丙燾는 비록 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집 사부가 중국의 門下省과 같은 행정기관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三國史記》國 譯篇, 乙酉文化社, 1977, 575쪽, 주 2 참조).

그러나 이 교서는 풍속관계 규정 이상의 보다 깊은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고 생각된다. 즉 교서에 보이는 진골 이하 六頭品·五頭品·四頭品·平人·百姓에 이르기까지의 다섯 신분등급별 풍속관계 규정 속에는 이에 구속되지 않는 특정한 집단의 존재가 느껴지는데, 이는 바로 국왕을 정점으로 한 왕실가족인 듯하다. 그러므로 흥덕왕이 이같은 교서를 내린 정치적의도는 풍속의 정치적 규제, 골품제의 사회적 기초를 구성하고 있는 同族집단에 대한 정치적 재평가, 지방에 거주하는 여러 집단에 대한 정치적 재편성과 더불어 무엇보다도 중국 황제의 지위에 대응하는 초월적 존재로서의 국왕의 創出에 있었다고 해석할 여지가 많다.5)

그렇다면 이같은 홍덕왕의 개혁정책이 과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당시 홍덕왕이 성취해야 할 최대의 정치적 과제는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진골귀족의 連帶性을 회복하는 일과 집권체제의 정비를 통한 왕권의 강화였다. 그런데 앞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진골귀족의 절대적 優位를 보장해야 했으며, 후자의 목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율령체제를 공고하게 다질 필요가 있었다. 특히 율령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신라 고유의 색채를 짙게 띠고 있는 관료기구에 대한 개혁이 불가피했다. 그런데 그신라적 특질의 張本이 다름아닌 골품체제였다. 요컨대 홍덕왕이 동시에 추구한 정치적 목표인 율령체제 강화와 골품체제 확립의 노력은 그 자체 양립할수 없는 相剋的인 대립물이었다. 바로 이것이 홍덕왕이 직면한 정치적 딜레마였던 것이다.6)

생각해 보면 흥덕왕의 개혁은 自營小農民의 보호라고 하는 이 시대의 가장 긴요한 정치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는 거의 힘이 미치지 못했다. 또한 권력구조의 결함을 바로잡는 데도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하대에 들어와 관례화되다시피 한 근친왕족 중심의 권력구조는 타파되지 않은 채 그대로 유지되는 형편이었다. 더욱이 진골귀족세력의 대화합을 모색하는 가운데 추진된

⁵⁾ 武田幸男、《新羅骨品制の再檢討》(《東洋文化研究所紀要》67, 東京大, 1975), 116 ~136 · 207~210쪽.

⁶⁾ 李基東、〈新羅 興德王代의 政治와 社會〉(《國史館論叢》21, 國史編纂委員會, 1991), 126等.

율령체제 강화의 노력은 그 자체 진골귀족의 정치적·경제적인 양보 없이는 달성될 길이 없었다. 그러므로 흥덕왕이 비록 교서를 내려 진골귀족들에 대해 法度에 맞는 생활규범을 제시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러한 규범을 강제할 수 없는 한 개혁조치는 필경 위선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2) 근시기구와 문한기구의 합체화에 의한 권력집중 시도

홍덕왕 9년(834)의 교서에서 볼 수 있듯이 왕은 節儉을 숭상하고 勤政과 개혁에 남다른 열의를 갖고 있었으나, 재위 11년 12월에 그가 죽자마자 곧바로 근친왕족들 사이에서 왕위계승쟁탈전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2년여의 짧은 기간 중에 두 명의 왕과 한 명의 왕위계승권자가 희생되었다. 이로 미루어볼 때 홍덕왕의 범진골귀족 화합책은 다만 왕실과 진골귀족 사이의 현존하는 긴장을 억제하는 현상유지적 측면이 강했을 뿐 진정한 의미에서 긴장 자체를 해소하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했던 것을 잘 알 수가 있다. 이는 결국 개혁정치의 기초가 허약했음을 폭로하는 것에 다름 아니지만, 무엇보다도 신라국가를 위해 불행했던 것은 왕위계승쟁탈전으로 말미암아 홍덕왕이 줄곧 추구한 정치개혁의 노력이 끝내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된 점이다.

신라는 그 뒤 문성왕 때 안정을 되찾아 소강상태에 들어갔는데, 이 때를 경계로 하여 관제개혁을 통한 집권체제 강화작업이 다시금 시도되었다. 그것은 특히 화랑 출신으로 유학에 대해서도 상당한 교양을 갖춘 경문왕이 즉위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경문왕은 15세 때 화랑자격으로 臨海殿에서 열린 궁중연회에 참석하여 아들이 없는 현안왕의 下問에 현명하게 답변함으로써 왕의 마음을 끌게 되고, 이것이 기연이 되어 왕의 사위가 되었다가 왕위를 계승한 인물이다. 그런데 그가 화랑으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닐 때목격한 것이라고 헌안왕에게 답한 세 가지 美行이란 필경 유학에 대한 지식을 갖고 둘러댄 것이다.7 경문왕은 즉위 후 동왕 3년(863) 2월 국학에 巡幸

⁷⁾ 李基東,〈新羅 下代의 王位繼承과 政治過程〉(《歷史學報》85, 1980;李基東, 앞의 책, 172쪽). 한편 김응렴이 말한 세 가지 美行을 讓·儉·恭의 세 가지 德目으로 간주하고 이는 전적으로 孔孟思想에 근원을 두고 있다고 논단한 글도 있

하여 박사 이하의 교수관으로 하여금 經義를 講論케 한 다음 각자에게 물품을 하사한 일이 있었는데, 이로써 왕의 유학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컸음을 짐작할 수 있다. 뒤에 그의 아들인 헌강왕도 동왕 5년(879) 2월 국학에 순행한일이 있다. 어쩌면 이는 父王의 영향 때문이었을 것이다. 참고로 《삼국사기》신라본기에 보이는 국왕의 국학 순행 기사를 보면 혜공왕 때의 2회와 경문왕·헌강왕 父子의 그것이 전부이다.

그런데《삼국사기》신라본기와 職官志는 흥덕왕 때 이후의 관제개혁에 대 해서 완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비교적 풍부하게 남아 있는 9세기 후반경의 金石文 자료에는 이 사실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다. 즉 경 덕왕 18년(759)에 漢式으로 고쳤다가 혜공왕 12년(776) 정월에 복구된 바 있 던 관청 및 관직 명칭이 대체로 850년대에 이르면 경덕왕 때 고친 이름으로 다시금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를테면 관청 이름에 있어서는 穢宮典이 珍閣省 으로. 領客府가 司賓府로. 內省이 殿中省으로. 司正府가 肅正臺로 나타나고 있으며, 관직명의 경우 가장 독자적인 명칭을 고집하고 있던 兵部의 차관직 인 大監이 侍郎으로, 大舍가 郞中으로, 弩舍知가 司兵으로 나타난다. 또한 倉 部의 경우에도 차관직인 卿이 시랑으로, 대사가 낭중으로, 租舍知가 員外郞 으로 나타난다. 한편 8세기말에 설치된 浿江鎭典의 경우 장관직명인 頭上大 監이 9세기말경의 여러 금석문에 예외없이 중국식 명칭인 都護로 되어 있다. 이 9세기 후반의 관청 및 관직 명칭에 대한 漢式개명이 내포하는 정치적 의의는 8세기 중엽 경덕왕 때의 제1차 한식개명과 같은 차원에서 파악될 성 격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경덕왕 때의 官號개혁이 태종무열왕 이래의 전제주의적 경향의 집중적인 표현이었다면, 그보다 대략 1백년 뒤인 9세기 중엽에 점진적으로 단행된 제2차 관호개혁은 제1차 개혁 때와 똑같은 의의

다(高明土,《唐代東亞教育圈的形成》,臺灣國立編譯館, 1984, 308~309쪽 참조). 이와 관련하여 신라 말기에 진골귀족들 사이에서 유교경전의 지식을 갖고 作名하는 일까지 유행했음을 想起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崔致遠이 지은〈鳳巖寺智證大師寂照塔碑文〉에는 원성왕의 昆孫으로 헌강왕 때 建功鄉令직에 있었던 金立言의 존재가 보이는데, 그이 이름은《左傳》襄公 24년조에 나오는 죽어도 不朽한 세 가지 사항, 즉 立德·立功·立言의 입언에서 취한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된다. 이로써 왕실가족들이 불교식 이름을 쓰던 중고시대와는 판이한 시대적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를 지니는 것으로 생각된다. 무엇보다도 희강왕 원년(836)부터 민애왕 2년 (839)에 걸쳐 격렬한 왕위계승쟁탈전을 치르는 과정에서 국왕의 권위가 크게 실추되었으므로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경덕왕이 시도한 것과 마찬가지로 관호의 한식개명에 집착한 듯하다.

당시 추진된 관호개혁에서 주목되는 것은 다름아닌 洗宅과 같은 근시기관의 기능강화 현상이다.8) 1975년 경주 안압지 발굴 때 나온 50여 점의 경덕왕 때 木簡 가운데 보이는 유일한 관청이 세택이었는데, 이는 경덕왕 18년 (759) 百官의 칭호를 한식으로 고칠 때 中事省으로 개명되었다. 하지만 그 뒤혜공왕 12년(776)에 종전의 세택으로 복구되었다. 〈昌林寺無垢淨塔願記〉에 의하면 문성왕 17년(855) 당시까지는 세택이란 명칭이 사용되었는데,〈皇龍寺九層木塔刹柱本記〉를 보면 경문왕 12년(872) 11월 25일 이전에 이미 세택이 중사성으로 다시금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이래 신라의 멸망에 이를 때까지 중사성의 명칭은 변합없이 사용되었다.

중사성은 국왕 직속의 그것과 東宮 직속의 그것이 각각 따로 존재했는데, 여기에는 中使들인 舍人 혹은 中舍人이 소속되어 있었다. 이 사인을 신라 사람들은 內養이라고도 불렀는데 국왕이나 태자에 대한 侍從이 그 본래의 임무였던 듯하다. 하지만 9세기 후반경에는 사인이 文翰기관인 崇文臺의 郞과같은 學士職을 띠고 있어 단순한 시종 임무보다는 오히려 詔誥를 작성한다거나 혹은 태자에게 유학을 강의하는 비서관 내지 文翰官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 아닐까고 짐작된다.

그런데 이 시기 중사성과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던 또 하나의 관청이 주목된다. 즉 宣教省이 바로 그것이다.⁹⁾ 이 관청은 중사성과는 달리《삼국사기》 직관지에는 실려 있지 않고 다만 9세기 후반의 금석문에만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9세기에 들어와 신설된 것으로 짐작되는데, 그 시기는 늦어도 헌안왕 4년(860) 이전이 분명하다. 이 선교성이 등장하는 금석문의 내용을 보면,이 관청은 국왕의 명령을 받아 迦智山寺를 직접 관장한다거나 혹은 智證大

⁸⁾ 李基東、〈羅末麗初 近侍機構外 文翰機構의 擴張―中世的 側近政治의 志向―〉 (《歷史學報》77, 1978; 앞의 책, 233~241等).

⁹⁾ 李基東, 위의 책, 241쪽.

師 道憲과 같은 선종 계통의 승려를 본래의 山寺로 호송한다거나 하는 등의 특수한 임무를 수행했다. 이 점 선교성은 중사성과 마찬가지로 국왕 직속의 관청인 것을 암시하고 있다. 어쩌면 선교성은 그 명칭으로 미루어 볼 때 발해의 宣詔省에 상당하는 것이 아닐까고 생각되는데, 만약 그렇다면 국왕의 교서를 작성 선포하는 관청이었을 개연성이 크다.

중사성의 기능강화라든가 선교성의 신설은 근본적으로 집사부의 변질에 연유하는 것이었다. 앞에서 보았듯이 집사부는 진덕여왕 5년(651) 국왕 직속의 관청으로 설치되어 그 뒤 중대 전제왕권의 전성기에 왕권의 안전판과도 같은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츰 집사부를 거점으로하는 새로운 세력의 성장을 초래하여 이윽고 중대 말기에 이르면 왕권에 제약을 가하는 요소로까지 발전했다.10) 그리하여 상대등과 집사부 장관인 시중은 같은 성격의 상하 관직으로 변모해 버리고 말았다.11) 경문왕 2년(862) 정월에 시중이 된 魏珍은 동왕 14년 정월 현직에서 곧바로 상대등직에 승진되기까지 했다.

이처럼 집사성이 창설 당시의 취지대로 왕명을 직접 받드는 행정기관의 성격에서 변질되자 국왕 직속의 새로운 관청이 필요해졌다. 왕권 회복기에 해당하는 9세기 중엽에 있어서 그 필요성은 더욱 절실한 형편이었다. 그 결 과 종래 국왕의 단순한 시종기관에 불과했던 세택을 다시금 중사성으로 개 명하고 이에 국왕 비서실의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일종 內朝를 형성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맡도록 했다고 짐작된다. 소위 내조의 領袖는 국왕 자신으로, 국왕은 중사성을 통해 측근의 세력집단을 형성하고 이제는 外廷이 된 집사 성의 실권을 차츰 여기에 흡수해 간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중사성과 같은 근시기구가 대두하고 있을 무렵 문한기구들이 승격 내지 확장된 사실은 주목되는 현상이다.¹²⁾ 신라 문한기관의 기원을 살펴보면 본디 당에 대한 事大外交의 문서를 담당한 詳文司에서 출발했다. 여기에 소

¹⁰⁾ 李基白,〈新羅 執事部의 成立〉(《震檀學報》25・26・27, 1964;《新羅政治社會史 研究》, 一潮閣, 1974, 167~170苓).

¹¹⁾ 李基白, 〈新羅 下代의 執事省〉(위의 책), 182~185쪽.

¹²⁾ 李基東, 앞의 책, 247~256쪽.

속된 詳文師는 성덕왕 13년(714) 2월 通文博士로 개칭되었는데13), 이는 그 뒤 경덕왕 때 百官의 명칭을 漢式으로 고칠 때 翰林郎으로 바뀌었다. 이 때 상문사가 翰林臺로 개칭되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혜공왕 7년(771) 12월에 만들어진 성덕대왕신종 명문을 보면, 당시 한림대는 唐制를 모방한 실로 정연한 관칭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즉 여기에는 한림랑과 待詔 등이 소속되어 있었다. 본디 외교문서를 작성하는 데는 한문과 유학에 대한 지식이 요구되었는데, 이는 진골귀족 출신보다는 오히려 6두품 귀족들의 기호에 맞는 것이었다. 잘 알려진 것처럼 强首나 薛聰 이래 6두품 출신들은 유학에 근거하여 그 학문적인 식견을 갖고 정치적 진출을 꾀했다.

그런데 9세기 후반의 금석문 자료들을 검토해 보면 한림대는 880년경을 전후한 시기에 瑞書院으로 개명되고 동시에 한림랑 대신에 學士 및 直學士 제도가 설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역시 같은 시기에 崇文臺가 崇 文館으로, 그 소속 관원인 郞이 직학사로 바뀌었다. 특히 崔致遠·朴仁範 등 대표적인 중국 유학생들이 서서원 학사직에 등용되고 있는 점에서 이 서서 원이 당시 문한기구의 중심적 존재였음은 의심할 바 없다. 무엇보다도 주목 되는 것은 이 문한기구가 근시기구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사실상 合体 化된 단일기관과 같은 느낌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문왕 때 명필로 활약 한 姚克一이 숭문대랑에 春宮中事省의 中舍人직을 兼帶한 것이라든지 金薳 이 숭문관 직학사직에 병부랑중을 겸한 사실, 그리고 최치원이 侍讀 겸 翰林 學士에 兵部侍郞과 知瑞書監事를 겸직한 것 등은 그 뚜렷한 예증이라 할 수 있다.

9세기 중엽 이후 근시기구를 확장하면서 내조의 강화에 집착해 있던 국왕들은 진골귀족세력의 포위망 속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쳤다. 그런데 이는 바로 6두품 출신의 정치적 입장과 합치되는 점이었다. 그들은 진골귀족 萬能의골품체제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으므로 그들이 결탁해야 할 대상은 국왕밖에는 달리 없었다. 한편 국왕의 입장에서 볼 때 6두품 출신 유학자들이 주

¹³⁾ ユ 외교사적 의의에 대해서는 濱田耕策、〈新羅聖徳王代の政治と外交―通文博士 と倭典をめぐって―〉(《旗田巍古稀記念 朝鮮歷史論集》上,龍溪書舍, 1979, 221~ 222等) 참조.

장하는 유교정치이념은 왕권강화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해 주었다. 바로 여기서 6두품 출신 유학자를 주축으로 한 문한기관이 확장되어 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경문왕과 그 아들 憲康王은 유학 내지 문학에 조예가 깊었는데, 이는 필경 유학지식을 갖춘 사람들과의 긴밀한 접촉에 연유하는 것이었다. 최치원이지은 崇福寺 비문에 의하면 경문왕 5년(865) 4월에 당의 懿宗이 보낸 사신 胡歸厚를 응대하는 자리에서 왕이 도성의 아름다운 경치를 시로 읊어 사신을 크게 당황하게 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 더욱이 그의 후계자인 헌강왕은 尚州 深妙寺 비문을 짓는다거나 혹은 月池宮에서 智證大師 道憲과 어려운禪問答을 하는 등 일류 교양인이요 문인이었다. 헌강왕이 9년(883) 2월 三郎寺에 거둥하여 문신들로 하여금 각각 詩 1首씩을 짓게 한 것도 그의 문인기질을 잘 보여준다. 이는 태자 시절 학사들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국왕을 영수로 한 내조의 강화는 진골귀족의 연대성을 파괴할 뿐이었고, 또한 문인 취향의 나약해진 국왕의 개성으로서는 차츰 농도가 짙어가는 위기 국면에 적극 대처할 수 없었다.

〈李基東〉

4. 골품제도의 퇴화

1) 골품제의 사회적 기반의 축소

주지하듯 골품제는 개인의 혈통의 每卑에 따라서 정치적인 출세는 물론혼인, 가옥의 크기, 의복의 빛깔이나 심지어는 牛馬車의 장식에 이르기까지일상생활 전반에 걸쳐서 여러 가지 특권과 제약이 가해지는 제도였다. 신라가 연맹왕국의 틀을 깨고 중앙집권적인 귀족국가를 형성할 무렵인 6세기초, 王京에 거주하는 6部人을 지배체제 속에 편제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 때 이들 신분의 등급을 정하기 위한 평가의 기준이 된 것이 혈연적・族的인 기반

이었다. 이렇게 왕경 지배자공동체의 배타적인 신분제로 출발한 골품제도는 法興王 7년(520)에 律令을 반포할 때 법제화된 이래 삼국통일을 거쳐 신라의 멸망에 이를 때까지 변함없이 정치와 사회를 규제하는 大本으로서 기능했다.

처음 골품제도는 聖骨과 眞骨이라는 2개의 骨과 六頭品으로부터 一頭品에이르는 6개의 두품을 포함하여 모두 여덟 개의 신분 계층으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삼국통일 직전에 성골이 소멸하여 결국 진골과 6개의 두품만이 남게되었다. 골품제도는 비록 왕경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특권을 부여한 신분제였으나, 그렇다고 해서 지방세력자를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었다. 골품제의정치적 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관등을 조정하는 일이었는데, 지방사회 말단의 세력자들인 村主계층에게는 6세기초부터 6부인에게 준 京位에 준하여 外位를 부여했다. 그런데 삼국통일전쟁이 최고조에 달했을 무렵 조정은 村主層에 대한 軍功 포상의 일환으로 경위를 주기 시작했다. 또한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된 직후 조정은 그 지배층을 포섭할 목적으로 이들에게 경위를 부여했다. 그리하여 삼국통일 직후 외위는 소멸되고 그 대신 경위로 일원화되었다.

이처럼 통일기에 들어와 지방 촌주계층에 대한 관등상의 차별대우가 폐지되었다. 그러나 촌주계층은 경위를 부여받았으면서도 정치참여는 여전히 배제되었으므로 골품제에 정식 포섭된 것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삼국통일 후 지방촌락으로부터 왕경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집작된다.1) 景德王 14년(755) 2월에 筆寫작업이 끝난 白紙墨書寫經《大方廣佛華嚴經》권 50의 끝에 실려 있는 跋文에 의하면 이 작업에 종사한 大京(경주) 출신 7명 가운데 오로지 經題筆師인 同智大舍의 골품(6두품)만이 明記되어 있을 뿐 나머지 사람들은 관등 이외에 신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통일기 골품제의 변화로서 주목되는 것은 첫째로는 3두품에서 1두품에 이르는 下位 3계층이 골품신분으로서의 자립성을 상실한 결과 平人 혹은 百姓 신분으로 떨어진 점과 둘째로는 지방 촌주층이 眞村主와 次村主로 분화되어

¹⁾ 木村誠、〈統一新羅の骨品制―新羅華嚴經寫經跋文の研究―〉(《人文學報》185, 東京都立大, 1986), 77~92等.

각각 5두품과 4두품에 준하는 대우를 받게 된 점이다. 이같은 사실은 신라의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한 풍속 규정의 내용을 담은 興德王 9년(834)의 교서에 보이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보이는 평인과 백성이 과연 같은 계층인지어떤지는 의문이다. 두 계층이 모두 4두품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명백하지만, 다만 흥덕왕의 교서 내용을 상세히 검토해 보면 평인이 色服 부분에만 규제받고 있는데 비해서 백성은 車騎・器用・屋舍의 세 부문에 걸쳐 규제를 받고 있고, 또 평인이 4두품에 접속하는 계층인 듯 기술된 데 비해서백성은 평인의 아래에 위치한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이처럼 생각할 때 평인은 관등을 갖고 있으면서도 골품제에 정식 포섭되지 않는 계층, 백성은 농민을 포함한 일반 주민으로 볼 수 있다.2)

이같은 골품제의 계층구성은 신라 말기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유지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최치원이 지은〈聖住寺朗慧和尚白月葆光塔碑〉에 "나라에 5品이 있으니 聖而요 眞骨이요 得難이라. (이 중 득난은) 貴姓의 얻기 어려움을 말한다. 文賦에 혹 구하기는 쉬우나 얻기는 어렵다고 했는데 따라 서 6두품을 말하는 것이다. 수가 많은 것을 귀히 여기는 것은 마치 1命에서 9命에 이르는 것과 같다. 다만 그 4품・5품은 족히 말할 바가 못된다"라고 한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최치원은 聖而(성골)를 포함하여 나라에 5품이 있다고 한 것이지만 이미 오래 전에 성골이 소멸된 만큼 당시에는 진골 이 하 6두품・5두품・4두품의 네 신분계층만이 존재한 셈이다. 이는 골품제의 사회적 기반이 그 만큼 축소되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2) 진골귀족의 분열

골품제에 입각한 신라사회에서 최대의 특권을 누리고 있던 신분계층은 진골이었다. 실로 신라사회는 진골 만능의 사회였다고 할 수 있다. 중앙의 제1급 관청의 장관직(令)을 비롯하여 州의 都督, 군부대의 지휘관인 장군직은모두 진골출신이 독점했다. 이 점은 신라의 멸망 때까지 변함없이 지속되었

²⁾ 木村誠, 위의 글, 95~97쪽.

다. 다만 하대에 들어오면서 김헌창의 난이나 홍덕왕이 죽은 뒤에 벌어진 왕 위계승쟁탈전에서 볼 수 있듯 진골귀족 상호간에 권력투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렇게 된 데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³⁾

첫째로 이 시기 진골귀족의 수효가 크게 증가한 점을 들 수 있다. 혜공왕 때의 대란이 王都 및 5道 州郡의 소위 96角干의 相戰이었다고 하는 《三國遺 事》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중대말에 官界에 진출하고 있던 진골귀족 의 숫자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었다. 그런데 그 10대조 혹은 12대조가 내물왕이라고 자처하는 선덕왕 원성왕에 의해 하대가 개창되면서 진골귀족 의 족적인 기반 확대와 더불어 그 양적인 증가·확산의 경향은 더욱 촉진되 었다. 이는 왕의 자손이라면 누구라도 世代數에 제한을 받지 않고 진골귀족 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던 골품제의 원리상 피할 수 없는 현상이기도 했 다. 이처럼 진골귀족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근친왕족이라 할지라도 관계 진출에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를테면 文聖王 17년(855) 昌林寺 無垢淨塔을 건립하는데 관계한 왕의 從弟 金銳의 경우 비록 그 官歷 연수는 알 수 없으나 당시 관등이 舍知, 관직이 縣令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왕의 從叔들인 金繼宗・金勳榮 역시 州의 長史 혹은 현령 따위 하위 관직에 있었 다. 이같은 사실은 당시 진골귀족이 포화상태에 다다른 것을 암시하고 있다. 한편 진골귀족의 증가와 병행하여 자체 내부의 도태작용이 수반된 것도 사 실이나, 이는 일부 논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일정한 세대수를 단위로 한 일 종 친족법적인 적용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4) 진골귀족들은 서로간의 권력투 쟁에서 패배함으로써만 몰락할 뿐이었다.

둘째로 하대에 들어와 왕실가족 및 진골귀족 집단 내부에서 血族관념의 分枝化 경향이 더욱 촉진되어 매우 좁은 범위의 사람들만을 포함하는 家系 (lineage)가 정치적·사회적 행동에 있어서 하나의 기초단위가 된 점을 들 수 있다. 이같은 혈족집단의 分家·新立의 경향은 이미 중고시대 이래 진행되어온 것이며,5) 중대 太宗武烈王계 내부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진행되고 있었다

李基東,〈新羅 下代의 王位繼承과 政治過程〉(《歷史學報》85, 1980;《新羅骨品 制社會의 花郎徒》,一潮閣, 1984, 177~183等).

⁴⁾ 李基東, 〈新羅 骨品制 硏究의 現況과 그 課題〉(위의 책), 30~34쪽.

는 것은 중대 왕통을 타도하려는 범내물왕계 진골귀족의 연합투쟁에서 金仁問계로 짐작되는 김주원이 金良相(宣德王)과 보조를 같이 한 데서 시사받을 수 있다. 5묘제도가 확립된 하대에서는 무엇보다도 直系상속이 존중된 결과직계와 傍系의 차이가 점차 顯示化함으로 해서 이같은 경향이 더욱 촉진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元聖王계 내부에서도 왕위계승을 둘러싸고 원성왕의 두 아들 仁謙과 禮英, 양 계통의 대립이 있었고, 왕통이 인겸계에서 예영계로 넘어간 뒤에는 다시 예영의 두 아들 金憲貞・金均貞, 양 계통의 알력이 있었다.

이처럼 당시 근친왕족들은 원성왕의 공동 자손이라는 의식에서 연합의 자세를 취하면서도 제각기 독립적인 家系 의식을 갖고 있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願利 건립인데, 김균정은 홍덕왕 3년(828) 7월 경북 迎日郡 神光面飛鶴山 소재 法光寺에 3층석탑을 건립할 당시 이 절의 檀越, 즉 施主者였다. 이같은 祈福的 성격의 造塔은 당시 귀족 사이에 유행하고 있었는데, 김균정이 법광사의 단월이었다는 것은 곧 이 절이 그의 가계에 속한 원찰이었음을 암시하고 있다.6) 한편 대구 桐華寺 비로암에 헌덕왕의 아들로 알려진 心智(心地)大德에 의해 景文王 3년(863)에 閔哀王의 供養塔이 만들어진 것으로 미루어 볼 때7) 이 절은 민애왕의 부친인 忠恭의 집안, 혹은 포괄적으로 인겸 태자 계통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던 사람들의 원찰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생각된다. 이같은 왕실 혈족집단 내부의 대립 현상은 홍덕왕이 죽은 뒤 곧바로 일어난 왕위계승쟁탈전 때 극명하게 드러났다. 실로 이 쟁탈전은 원성왕의 여러 손자를 시조로 하는 가계들의 연합과 대항 속에서 진행되었던 것이다.8)

사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왕실가족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하대의 개

⁵⁾ 李基東,〈新羅 奈勿王系의 血緣意識〉(《歷史學報》53·54, 1972; 위의 책, 63~89等).

⁶⁾ 黃壽永、〈新羅 法光寺 石塔記〉(《白山學報》8, 1970;《韓國의 佛教美術》, 同和 出版公社, 1974, 200~202·210~211等).

⁷⁾ 黄壽永、新羅 敏哀大王 石塔記―桐華寺 毘盧庵 三層石塔의 調査一〉(《史學志》3, 1969; 위의 책, 216~229쪽, 특히 228쪽).

⁸⁾ 李基白,《新羅政治社會史研究》(一潮閣, 1974), 181쪽.

창 이래 70여 년 이상의 오랜 기간에 걸쳐 몇 사람의 시중을 배출한 바 있는 김주원 집안도 이 시기에 分枝化의 경향을 보였다. 憲德王 14년(822) 김주원의 아들 김헌창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그 종족・당여가 239명이나 주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형인 金宗基 집안은 그 뒤계속 건재하여 그 손자들인 金陽・金昕 등은 830년대 후반의 왕위계승쟁탈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종형제 관계인 김양과 김혼의 정치적 입장이 각기 달라 김양이 민애왕을 타도한 金祐微(神武王)쪽의 최대의 공신인데 반해서 김혼은 민애왕쪽의 군사령관으로 달벌방어전에 出陣한 점이다. 역시 김주원과 같은 태종무열왕의 6세손인 金周川 집안도 김헌창의 난을 겪으면서 그 아들 範淸(朗慧화상의 부친)이 비록 진골신분에서 한 등급 강등되기는 했으나 被誅되는 것을 모면한 것을 보면 당시 혈족집단 내부의 분가・신립 경향이 일반화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통일기 진골귀족의 변화 문제와 관련하여 그대로 지나칠 수 없는 것이 지방 小京에 거주하던 귀족들의 존재이다. 일찍이 조정은 智證王 15년(514) 정월 阿尸村에 소경을 설치한 뒤 그 해 7월 왕경 6부와 남쪽 땅의 人戶를 이곳에 이주하게 한 적이 있다. 영토확장전쟁이 본격화된 眞興王 19년(558) 2월에는 귀족의 자제와 6부의 부호를 전년에 신설한 國原小京에 이주하도록 했는데, 이 徙民策은 진골귀족의 지방확대를 초래한 요인이 되었다.9) 삼국통일후 5소경제도가 확립되면서 지방으로 이사한 진골귀족의 수효는 크게 증가했을 것이다.

비록《三國史記》권 40, 職官志 下, 外位조에는 王京 6부의 진골로서 5소 경과 9주에 出居한 사람에게 문무왕 14년(674)에 외위 관등을 주었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혜공왕 4년(768)의 대란 때 왕도를 비롯하여 전국 5도 주군의 96각간이 서로 싸웠다고 한 것만 보더라도 이들 지방 거주 진골귀족들의 존재가 잘 감지된다. 사실 삼국통일 후 중앙귀족의 지방 진출에 수반하는 재지세력의 재편성이 진행된 결과 경덕왕 때 녹읍제도의

⁹⁾ 지방의 진골을 'Oejin'(外眞)이라 명명한 사람도 있으나(William E. Henthorn, *A History of Korea,* The Free Press, 1971, 78쪽), 이 용어가 신라시대에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어떤지는 의문이다.

부활과 군현제의 재편이라는 지방 지배체제의 일대 개혁을 초래했다는 견해마저 나오고 있을 정도이다.10) 그런데 이 소경의 귀족들은 현지에서 재지세력과 사적인 결합관계를 맺으면서 경제력을 확대해 가는 데는 유리한 측면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다만 官界 진출에 있어서는 중앙귀족에 비해서 차츰 불리해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에 따라 그들의 조정에 대한 불만도 확대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填聖女王 3년(889) 전국적인 농민반란이 터지기직전인 定康王 2년(887) 정월에 漢州의 이찬 金蕘가 반란을 일으킨 것도 이같은 관점에서 주목되는 사실이다.

3) 6두품세력의 성장

골품제도에서 진골 바로 다음가는 신분이 6두품이었다. 이 6두품에는 신라의 母胎가 되는 斯盧부족을 형성한 여섯 씨족장 가문의 후예와 신라의 팽창과정에서 그에 의해 병합된 押督國(慶山) 등 여러 성읍국가의 지배층 후예들, 그리고 고구려・백제 멸망 후 신라에 포섭된 상급귀족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¹¹⁾ 그러므로 그들의 자기 신분에 대한 자부심은 남다른 바가 있었다. 최치원이 자랑했듯이 6두품은 좀처럼 얻기 힘든 貴姓으로 그 자체 득난이라 부를 만한 신분이었고, 한편 5두품이나 4두품은 바로 그아래 접속되어 있기는 하지만 족히 말할 바가 못되는 신분으로 간주했다.

비록 그렇기는 했지만 진골귀족 만능의 골품제사회에서 6두품 출신은 官界 진출에 크나큰 제약을 받았다. 즉 6두품은 17등 관등 가운데서 제6관등인 阿湌까지만 승진이 허용되었을 뿐이다. 그러므로 제5관등인 大阿湌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는 중앙의 제1급 관청의 장관직에는 오를 수 없었다. 따라서 6두

¹⁰⁾ 木村誠、〈新羅郡縣制の確立過程と村主制〉(《朝鮮史研究會論文集》13, 1976), 23쪽,

¹¹⁾ 李基白,〈新羅 六頭品 研究〉(《省谷論叢》2, 1971; 앞의 책, 39~57쪽). 한편 6두품이 씨족장 가문의 후예가 아니라, 중고기 후반에 들어와 族的 제약과 部體制의 규제로부터 벗어나 개인적 차원에서 자유롭게 추구되는 인간관계가 특정한 진골귀족을 주축으로 하여 새로이 형성되고 있을 무렵 진골세력에 투철한 종속성과 충성심을 보임으로써 그 후원을 입어 생성된 부류라는 견해도 있다(徐毅植,〈重位制 施行의 推移와 支配身分層의 變化〉,《新羅上代'干'層의形成・分化와 重位制》, 서울大 博士學位論文, 1994) 참조.

품은 각 부의 차관직인 시랑 혹은 경에 오르는 것이 고작이었다. 또한 군직에 있어서도 6停・9誓幢을 비롯한 주요 군부대의 부지휘관인 대감직에 한정되었다. 군태수나 현령직은 6두품에게도 개방되었으나, 상급기관인 州의 장관 역시 진골이 독점했으므로 6두품은 차관직인 州助(일명 州輔・別駕)에 그쳤다. 실제로 6두품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관직은 중앙의 執事侍郞직과 지방의 浿江鎮典 都護직이었다. 비록 조정은 소위 重位制를 설치하여 6두품 출신의 아찬 관등 소지자가 重阿湌에서 4重阿湌에 이르기까지 승진할 수 있도록배려하긴 했다. 하지만 이같은 특진제도를 갖고서도 아찬의 범주를 벗어날수 없었다.12)

이처럼 6두품 출신들은 관계 진출에 제약을 받고 있었으므로 그들 중에는 일찍부터 종교나 학문과 같은 지적인 능력에 의해서 출세의 길을 트려는 경향을 나타냈다. 삼국통일 직후 强首와 薛聰은 문장 혹은 유학 실력으로 출세했는데, 중대 전제왕권 아래서 6두품 출신의 유학자들은 왕권과 결탁해서 국왕의 정치적 助言者로서 활약하게 되었다. 하대에 들어와 국학에 독서삼품과가 설치되면서 6두품은 관계 진출의 제도적 보장을 받았다. 특히 일반 진골 귀족 위에 군림하는 초월적인 君主像을 목표로 정치개혁에 열중하고 있던하대의 군주들에게 6두품 관료들은 큰 총애를 받았다. 왕이 되기 직전의 원성왕의 꿈을 해몽했다고 하는 아찬 餘三(일명 餘山)이라든가, 혹은 헌덕왕 때상대등 충공에게 복잡한 인사문제나 김헌창의 난 진압 방안에 대해 조언한집사시랑 아찬 豫眞과 같은 존재는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13)

9세기에 들어오면 중국유학열이 최고조에 달했다. 희강왕 2년(837) 3월 당시 당의 국학에서 수학 중이던 신라 유학생은 모두 216명을 헤아리게 되었고, 文聖王 2년(840)에는 수학연한 10년이 지난 宿衛學生 105명이 중국 황제의 명에 의해서 집단으로 귀국당하기까지 했다. 이에 많은 6두품 출신들이당에 유학하고 돌아왔다. 더욱이 長慶 원년(현덕왕 13년; 821) 이래 당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하여 시행한 과거(賓貢科)시험에 급제한 유학생들이 나타나기시작했다.14) 최치원은 경문왕 14년(874)에, 朴仁範은 헌강왕 3년(877)에, 崔承

¹²⁾ 邊太燮,〈新羅 官等의 性格〉(《歷史教育》1, 1956), 65~68\.

¹³⁾ 李基白, 앞의 책, 56~63쪽.

祐는 진성여왕 7년(893)에, 崔彦撝는 孝恭王 10년(906)에 각각 登第했다. 당에서 벼슬하고 돌아온 이들은 瑞書院과 같은 문한기관에서 學士로, 혹은 집사성을 비롯한 제1급 중앙관청의 시랑이 되어 유교정치이념을 고취했다.

이처럼 6두품 귀족들은 하대에 줄곧 그 정치적·사회적 역량을 확대시켜 갔다. 진골귀족의 합의제를 기본으로 하는 골품제적인 정치운영 방식을 개혁하여 권력을 국왕 개인에게 집중시키려 하던 야심적인 군주들에게 그들은 매우 필요한 존재였다. 그렇지만 그들이 아무리 유용한 존재였다고 하더라도 결코 진골로의 신분 승격을 바랄 수는 없었다. 이에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신분을 초월하여 오로지 학문 실력에 기준을 두고 인재를 등용하는 제도를 갈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신라 말기에 6두품귀족 사이에 골품제 자체를 타파하려는 움직임이 싹트게 된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李基東〉

5. 수취체제의 모순과 농민층의 피폐

1) 귀족 및 사원의 농장경영과 왕경의 번영

신라통일기를 통해서 진골귀족들의 압도적인 우세를 지탱시킨 기초에는 그들의 대토지 경영이 있었다. 삼국통일을 성취할 때까지 신라는 1백 년 이상 가혹한 생존전쟁을 체험한 까닭으로 귀족 역시 긴장과 고난의 생활을 영위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사실 귀족들은 이 기간 동안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다. 이윽고 통일이 달성되자 귀족들은 포로와 말 등 많은 戰利品을 나누어 갖게 되었다. 그러나 삼국통일 직후인 神文王 9년(689), 그간 진골귀

¹⁴⁾ 申瀅植,〈宿衛學生考〉(《歷史教育》11·12, 1969;《韓國古代史의 新研究》,一潮 閣, 1984, 430~461等).

李基東、〈新羅 下代 賓貢及第者의 出現과 羅唐文人의 文驩〉(《全海宗博士華甲紀念 史學論叢, 一潮閣, 1980; 앞의 책, 280~304쪽).

濱田耕策,〈新羅の國學と遣唐留學生〉(《呴沫集》2,1980),65~68쪽.

金世潤、〈新羅下代의 渡唐留學生에 대하여〉(《韓國史研究》37, 1982), 149~168쪽.

족들의 사적 기반이 되어 온 禄邑이 폐지되어 큰 타격을 입기도 했다. 이 녹 읍은 일정한 토지에서 나오는 수확물과 더불어 그 곳에 거주하는 백성의 노 동력까지를 징발할 수 있는 일종 食邑의 성격을 갖는 것이었다.

그런데 중대 말기인 景德王 16년(757)에 녹읍이 부활되었다. 비록 이「후 기녹읍 은 그간 국가가 孔烟制라든가 9등호제, 특히 計烟의 설정 등을 통해 서 백성의 경제력을 속속들이 파악한 데서 나온 자신감의 표시이기도 했을 것이지만, 어쨌든 귀족관료들이 후기녹읍에서 주민과 토지에 대한 총체적 지 배의 가능성을 예상하고 이를 받아들였을 것으로 짐작된다.1) 곧 이어 하대 가 개막되었고 전반적으로 국가권력이 쇠퇴하자 진골귀족들은 녹읍 이외에 토지 겸병 혹은 개간 등의 수단을 통해서 점차 대토지를 소유하게 되었다. 《新 唐書》新羅傳에 "재상 집에는 祿이 끊이지 않고 奴僮이 3천 명이나 되고 甲 兵과 牛・馬・돼지 등도 이와 맞먹는다. 가축은 海中의 산에 放牧을 했다가 필요할 때면 활을 쏘아서 잡는다"고 한 것은 당시 귀족들의 농장경영 실태 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생생한 자료이다. 다만 이 기록은 얼마쯤 과장된 것인 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일본 승려 圓仁의《入唐求法巡禮行記》권 4. 會昌 7 년(847) 9월 6일자의 기록에서 보듯 신라 제3재상의 放馬處가 무주의 남쪽 경계인 黃茅島의 奧地에까지 놓여 있을 정도로 진골귀족의 목장은 전국에 걸쳐 존재했다. 당시 絶影島는 말 사육장으로 유명하여 훗날 후백제왕 甄萱 은 이 곳 駿馬를 고려 太祖에게 선물한 적도 있었다.

대토지경영은 비단 귀족들에게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었다. 그것은 국가와왕실, 귀족들의 열성적인 후원을 받으면서 성장해 온 사원세력도 그 예외가아니었다. 文武王 4년(664) 조정은 사람들이 함부로 財貨와 田地를 사원에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했으나 통일기에 들어와 왕실과 귀족들 사이에서는 사원에 토지와 노비를 기부하는 일이 끊이지 않았다. 이 사원 소유의 토지는 免稅의 특전을 누렸다.

¹⁾ 金基興,《삼국 및 통일신라 세제의 연구》(역사비평사, 1991), 156~157쪽. 한편 녹읍의 부활을 주도한 세력이 전제왕권 아래서 새로이 성장한 관료적 진골귀족 이었다는 견해도 있다(李喜寬,《統一新羅 土地制度研究—新羅村落帳籍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西江大 博士學位論文, 1994, 74~77쪽 참조).

그런데 佛事활동에 열성적인 귀족들 중에는 직접 出家하거나 혹은 가족을 출가시켜 사원을 관리하게 하는 등 사원 사유화 및 그 소유권의 세습현상을 나타내기도 했다.²⁾ 특히 하대에 들어오면 哀莊王 7년(806) 3월 불사의 新創을 금지하는 조정의 布告에도 불구하고 귀족들은 다투어 願刹을 건립했는데, 여기에는 재산 도피의 목적도 일부 작용했다. 또한 살던 집을 精舍로 만드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 이 밖에도 왕실과 귀족들로부터 佛像이나 탑을 조성하기 위해 재물을 헌납하는 일이 크게 유행했다. 《三國遺事》권 3, 塔像條를 보면 당시 사원들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 소위 莊舍를 설치하고 관리인으로 知莊을 파견했음을 알 수가 있다. 즉 五臺山 眞如院은 국왕의 명령에 따라 화엄경 轉寫 비용을 마련할 요량으로 매년 가까운 州縣으로부터 倉租 1백 石과 淨油 1石을 받았으며 이와는 별도로 부근의 柴地 15結과 栗枝 6결, 坐位 2결을 받아 장사를 두었다고 한다. 또한 9세기 전반경에 世達寺는 溟州 捺李郡(현재의 寧越)에 장사를 두고 승려 調信을 보내어 지장을 삼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조신은 뒤에 京師로 돌아가 私財를 기울여 淨土寺를 창건한 바 있었다.

통일기 신라의 모든 富는 왕경에 집중되었다. 당시 왕경은 5개의 지방도시인 小京에 대하여 大京이라 불려졌는데, 《삼국유사》의 기록에 의하면 전성시대 왕경의 戶口數는 17만 8,936호였다고 한다. 한 집에 평균 5명으로 계산하면 이는 90만 명에 달해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따라서 17만이라는 숫자는호구수가 아닌 인구수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시로서는 거대도시였음이 분명하다. 삼국통일 초기인 孝昭王 4년(695)에 종전의 東市 이외에 새로이 시가지의 서쪽과 남쪽에 공영시장을 개설한 것도 당시 왕경의 인구증가에 따른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왕경의 도시행정을 담당하는 典邑署(경덕왕 때 典京府로 개청됨)에는 木尺이라 불려진 70명에 달하는 토목기술자가 배치되어 있었다. 이들은 왕궁의 건축과 영선 이외에도 시가지의 측량과 조성을 담당했다.

신라조정은 통일 직후부터 唐의 長安城을 모방하여 본격적으로 시가지 확

²⁾ 郭丞勳、〈新羅 中代 末期 中央貴族들의 佛事活動〉(《李基白先生古稀紀念 韓國 史學論叢》上,一潮閣, 1994, 368~375쪽).

장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6部・55里・360坊이라는 실로 정연한 도시 구획이 일단 완성되었다. 오늘날에도 경주시를 중심으로 한 주위의 평야지대에서는 마치 바둑판 모양의 동서남북이 매우 규칙적으로 평행되는 크고 작은 도로망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를 복원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가지의 동서 길이는 3.9km에 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남북의 길이는 비록확실한 수치를 알 수 없으나 대략 4.3km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동서길이 9.7km, 남북 길이 8.2km에 달하는 장안성에 비하면 약 1/5 정도의 크기이지만 8세기 일본의 수도인 奈良 平城京과는 대략 비슷한 규모이다. 다만수도의 심장부라고 할 宮城을 왕경의 북쪽 끝 중앙에 두려는 당초의 시도는 北川의 잦은 범람으로 궁궐문이 떠내려가는 등 그 유지 관리가 어려워 끝내포기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왕경의 중앙 남쪽에 위치한 본래의 月城을 계속 궁성으로 사용했다.3)

신라 말기에 속하는 헌강왕 6년(880) 9월에 국왕은 측근의 신하 몇 명을 거느리고 月上樓라고 하는 이름난 누각에 올라가 왕경 시가지를 내려다 본일이 있다. 이 때 왕이 시중 敏恭과 문답한 것을 기록한 《삼국사기》에 의하면 즐비하게 늘어선 民家는 짚이 아닌 기와로 지붕을 덮었으며 또한 나무가아닌 숯으로 취사했다고 한다. 하긴 왕경 내 모든 백성들이 윤택한 생활을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대체로 말한다면 중류 이상의 왕경인들은 풍요로운 생활을 누렸던 것 같다.

하대에 들어와 왕경의 사치풍조는 매우 심각했다. 이같은 풍조는 왕실이 앞장을 서서 몰고 갔으며 진골귀족들 사이에서 만연했다. 삼국통일이 대개 달성될 무렵인 문무왕 14년(674) 2월 궁성 안에 못을 파고 인공섬을 만들어화초를 심고 진기한 짐승을 길렀다고 한다. 현재의 雁鴨池가 바로 그것인데, 그 뒤 못가에 臨海殿을 새로이 짓고 역대 왕들은 이 곳에서 궁중 연회를 자주 열었다. 왕실은 이 밖에도 사철따라 거처하는 국왕 일가의 별장을 왕경 주변의 산언덕 전망이 좋은 곳에 마련했고, 따로이 시내에는 離宮이 몇 채 있었다. 하지만 하대 진골귀족의 사치생활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은 건물에

³⁾ 金秉模, 〈신라 수도로서의 경주—도시계획〉(《歷史都市 慶州》, 悅話堂, 1984), 123~134쪽.

金箔을 한 소위 金入宅이라고 불린 호화주택이었다. 이 금입택은 왕경 안에 만 39채나 되었다.4) 사실 조정은 막대한 양의 금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哀莊王 7년(806) 왕명을 내려 금은으로써 器用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것은 지켜지지 않았다. 鐵原 到彼岸寺나 長興 實林寺의 毘盧遮那佛像에서 볼 수 있듯 9세기 후반경부터 종래의 金銅佛 대신 鐵佛이 유행하게 된 것도 구리의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집작된다.

그리하여 興德王 9년(834) 조정은 귀족들 사이에서 만연하고 있던 사치풍조를 규제하기 위해서 광범위한 부문에 걸친 생활 간소화 법령을 공포하기까지 했다. 하긴 이 법령은 지방의 일반 백성까지를 그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나, 역시 주된 대상은 진골귀족이었다고 생각된다. 이 법령 중에서 진골귀족의 주택에 대한 규제 내용을 살펴보면, 지붕에는 막새기와(唐瓦)를 덮지 못하며, 서까래 끝이나 문틀 주위를 금과 은, 혹은 양질의 銅으로 장식하지 못하며, 주택의 基壇石으로는 잘 다듬은 석재를 쓰지 못하며, 담벽에는 石灰를 칠하지 못하게 하는 등 자못 철저했다. 하지만 이 간소화 법령도 금박의 사용 금지와 마찬가지로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 그것은 앞서 보았듯이 이로부터 50여 년쯤 지난 뒤인 憲康王 6년(880) 왕경 민가의 실태가 잘보여주고 있다.

홍덕왕 9년(834)의 교서에는 궁중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外來 사치품의이름이 다수 열거되어 있다. 이를 보면 타슈켄트와 아랄海 지방에서 나오는 보석인 瑟瑟, 양모를 주성분으로 한 페르시아산 고급 모직물, 캄보디아산인翡翠毛, 보르네오·자바산 玳瑁, 자바·수마트라산의 향내나는 紫檀 등 여러가지가 있다.5) 이같은 외래품을 선호하고 있던 당시 왕경의 도시적 분위기는 다분히 향락적이고 퇴폐적인 느낌마저 주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말기로접어들수록 더욱 심각해졌다.

⁴⁾ 李基東、〈新羅金入宅考〉(《震檀學報》45, 1978;《新羅骨品制社會外 花郎徒》,一潮閣, 1984, 183~208季)。

⁵⁾ 李龍範、〈三國史記에 보이는 이슬람 商人의 貿易品〉(《李弘稙博士回甲紀念 韓國史學論叢》、新丘文化社、1969)、96~101等.

2) 농민층의 피폐와 자영농민의 몰락

진골귀족들의 農莊 경영이 전개되는 가운데 자립적인 小農層이 광범하게 몰락해 간 것은 필연적인 추세였다. 사실 지방의 일반 촌락민들은 장기간에 걸친 국가보위전쟁과 삼국통일전쟁을 치루는 과정에서 이미 다수가 희생되 었거나 혹은 부채에 견디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몰락했다. 삼국통일 직후인 문무왕 9년(669) 2월 21일, 국왕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下敎하는 가운데 "집안 이 어려워 남의 米穀을 빌려 먹은 자로 농사가 잘 안된 곳에 사는 자는 元 쇼과 이자를 갚지 않아도 되고, 만일 농사가 잘 된 곳에 사는 자는 금년 추 수 때에 단지 그 本穀만을 갚고 이자는 물지 말 것이니, 30일 기한으로 하여 담당 관청은 이를 奉行하라"고 지시한 것은 당시의 사정을 잘 말해준다.

하지만 이같은 德政令을 매번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신문왕 9년 (689)에 그간 진골귀족들에게 지급해 온 녹읍을 폐지한 것도 이들 자영농민보호에 그 일차적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고 짐작된다. 실로 자영농민들이야말로 중대 전제왕권의 기초였던 것이다. 성덕왕 21년(722) 8월에 국가가처음으로 백성에게 丁田을 지급한 것은 자영농민 육성의 적극적인 의지를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사실 당시 거듭된 재해로 말미암아 농민층은 몰락 위기에 처했었다. 이같은 긴급사태의 도래를 계기로 하여 조정은 均田制의 입법정신에 입각한 토지 지급을 시도한 것으로 생각된다.6) 하지만 농민을 촌

⁶⁾ 일본 奈良 正倉院에 있는 신라촌락문서에 의하면 통일기 신라의 토지는 結・負・束으로 정확히 파악되고 있었다. 또한 전답의 비옥도를 구분하는 田品 역시 歲易의 정도에 따라 上・中・下 3등으로 파악된 듯하다(李仁哲,〈新羅 統一期의 村落支配와 計烟〉,《韓國史研究》54, 1986, 7쪽). 성덕왕 21년의 丁田 지급이란 이상과 같은 기반 위에서 백성들에게 토지의 結負數에 따라 소유권을 인정해주고, 口分田까지도 일부 지급한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金基與, 앞의 책, 166쪽). 이와는 달리 丁田 지급이란 본래부터 농민의 사실상 사유지였던 田・畓(이른바 烟受有田・畓)에서 田品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매년 실제 경작 역부와 관계없이 전체 연수유전・답을 대상으로 하여 田租를 거두게 된 조치로이해하는 견해도 있다(李喜寬, 앞의 책, 1994, 127~154쪽). 한편 연수유전・답에 대한 연구사의 정리는 李仁哲,《新羅의 村과 村民支配에 관한 研究—正倉院所藏 新羅帳籍을 中心으로—》(韓國精神文化研究院 博士學位論文, 1993), 175~177쪽 참조.

락공동체적 結集에서 분리시키지 못하는 한 정전 지급을 통한 촌락민에 대한 個別 지배의 노력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한편 삼국통일 후 1백 년 이상에 걸친 국제 평화와 국내 안정의 결과 농업생산력은 꾸준히 향상되고 상공업은 발전을 거듭했다. 비록 수공업 부문에서는 여전히 관영수공업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으나, 그 생산기술의 발달로 국내의 物貨유통은 촉진되고 중국·일본과의 대외교역도 활기를 띠게 되었다.특히 집권체제가 허술해진 하대에 들어오면 사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한 상인층이 등장하기 시작하여 국가의 온갖 규제로부터 벗어나고자 몸부림쳤다. 한편 수공업 기술자인 匠人들 가운데 일부는 工價를 받고 물품 제작에 임하는등 그 사회경제적 지위가 향상되어 장인사회 자체가 분화의 조짐을 보였다.7)바야흐로 신라사회가 사회적 분화의 문턱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계층의 분해작용이 소리없이 진행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다.

앞서 골품제의 변질과정에서 확인한 것처럼 그것은 비단 일반 농민층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골품제의 하부를 구성하고 있던 3두품 이하 1두품까지의 신분층이 골품제에서 탈락되어 平人・백성층과 一體化된 것은 그 뚜렷한 증좌이다. 하지만 보다 주목할 만한 변화를 겪은 것은 다름아닌 일반 농민층이었다. 일부 자영농민 이외에 토지를 갖지 못한 상당수의 농민들은 날품팔이로 겨우 생계를 이어가는 소위 傭作노동자로 떨어진 것이다. 《삼국유사》권 5,孝善篇에는 이같은 용작 사례가 많이 보인다. 이를테면 뒤에 義湘大師의 10대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된 眞定이라든지 혹은 佛國寺와 石佛寺창건의 주역이 된 金大城의 轉生설화에 등장하는 그 어머니 慶祖가 바로 그들이다.

중대 말기인 景德王 16년(757)에 녹읍이 부활되고 멀지 않아 국가의 역량이 크게 축소된 하대가 전개됨에 따라 농민층의 계층분화는 한층 더 현저해졌다. 대규모의 田莊을 소유하게 된 귀족층과 그간 지방 촌락사회에서 촌주로 행세하며 세력을 확장해 간 부농층은 끊이지 않는 力役 정발과 식량기근에 허덕이는 자영 小農의 토지를 겸병했다. 사실 소농 중에는 아예 유력자에

⁷⁾ 朴南守, 〈중·하대 장인의 분화와 사회경제적 지위변동〉(《新羅手工業史》, 신서 원, 1996) 참조,

게 토지를 양도하고 그 비호 아래 들어가는 사람도 많았다. 그리하여 귀족과 부농층은 無田 농민들에게 농지를 빌려주고 地代를 징수하는 경영방식을 취 하여 수입의 안정을 확보하려고 했다. 이에 농민들 중에는 자유민의 신분이 면서도 그 지배 아래 들어가 생계를 유지하는 길을 택하는 자가 늘어나게 되었다. 이처럼 신라사회에는 地主・佃戶制에로의 傾斜라는 새로운 현상이 빚어지고 있었다.8)

현재 일본 奈良 正倉院에 남아 있는 신라 통일기 西原京 지방의 촌락문서의 작성연대인 을미년을 둘러싸고 학계에서는 경덕왕 14년(755)과 헌덕왕 7년(815)에 比定하는 兩說이 유력한데, 후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9) 그런데 이 문서를 통해서 우리들이 받은 인상은 농민들의 생활조건이 매우 열악했었다는 점이다. 촌락의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웃돌고 있는 것이라든지, 60세 이상 살아남은 사람이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던 것은 이 사실을 잘말해주고 있다. 또한 농촌의 호구 이동현상이 뚜렷한 것도 당시의 사회경제적인 피폐상을 반영하는 것에 다름아니라고 생각된다.

하긴 연구자 중에는 이를 촌락민의 문서로 간주하고 당시 ① 농촌의 인구는 적은데 비해 경지면적은 매우 넓으며, ② 農家가 보유하고 있는 牛・馬등 가축수가 상당히 많으며, ③ 촌락마다 원예작물 특히 果樹 재배가 성행하고 있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당시 농업이 후세에 비해 粗放농업이었다고하더라도 생산기구의 개량, 노동생산성의 향상 및 확대 가능성은 얼마든지보장되어 있는 만큼 농민은 이러한 조건 하에서 생산의 증대를 위해 노력했을 것으로 보았다.10) 그렇지만 이 문서를 기본적으로 녹읍제도에 의한 內省

⁸⁾ 金容燮、〈農業史〉(《韓國文化史新論》, 中央大 中央文化研究院, 1975), 377~378쪽.

⁹⁾ 다만 최근에 촌락문서의 작성연대를 효소왕 4년(695)으로 보는 신설이 제기되었다. 이에 의하면 촌락문서가 부착된 '華嚴經論第七帙'의 재질은 촌락문서와 같은 楮紙의 白紙이며, 나아가 여기에는 舊譯《華嚴經》의 주석서인 100권으로된 北魏의 靈辨(477~522)이 撰한《화엄경론》이 들어 있었고, 이는 8세기 전반경신라 출신의 화엄학승인 審詳에 의해 일본으로 전해져서 造東大寺司의 寫經所를 거쳐 正倉院에 入庫되었을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尹善泰,〈正倉院 所藏新羅村落文書의 作成年代一日本의《華嚴經論》流通狀況을 중심으로一〉,《震檀學報》80, 1995, 1~31쪽).

¹⁰⁾ 李佑成,〈三國遺事所載 處容說話의 一分析〉(《金載元博士回甲紀念論叢》,乙酉文化社,1969;《韓國中世社會研究》,一潮閣,1991,191~192零).

혹은 왕실 직속의 촌락지배를 보여주는 일종 集計帳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¹¹⁾ 유력한 만큼 이 문서에 보이는 촌락의 실태를 보편적인 것으로 로 간주하는 주장에는 문제가 없지 않다고 생각된다. 요컨대 하대에 들어와 촌락민의 계층분화가 한층 더 촉진되어 가는 가운데 촌락의 공동체적 결합 관계가 차츰 동요하기 시작했고, 이와 동시에 유력한 村主層을 주축으로 해 서 촌락 재편성이 진행되어 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¹²⁾ 이 과정에서 촌락 공동체를 이탈한 농민들이 속출한 결과 대량의 流民이 발생하는 등 사회혼 관은 차츰 加重되어 갔다.

〈李基東〉

¹¹⁾ 武田幸男、〈新羅の村落支配―正倉院所藏文書の追記をめぐって―〉(《朝鮮學報》 81, 1976), 233~235等.

浜田耕策、〈新羅村落文書'研究の成果と課題〉(唐代史研究會編、《律令制一中國・朝鮮の法と國家一》, 汲古書院, 1986), 590~596等.

金基興、〈新羅'村落文書'에 대한 新考察〉(《韓國史研究》64, 1989), 29~34쪽.

¹²⁾ 木村誠、〈新羅の祿邑制と村落構造〉(《歷史學研究》別冊特輯, 1976), 59~60쪽.